

鮮初 宗廟 正殿 창건형식의 起源

정기철

(선문대학교 건설공학부 조교수)

1. 서론

조선 태조 4년에 창건된 종묘 정전의 건축형식은 명종조의 증축, 광해군대의 종묘재건, 영종조, 헌종조의 증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¹⁾. 태종대 동서상의 신축과 그 이후 정전의 증축을 제외한다면 창건 당시의 건축형식이 그대로 보존되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종묘 정전의 건축형식에 대해 그간의 연구에서는 實錄 및 儀軌의 관련기사와 國朝五禮儀序例의 '宗廟' 도설을 기준으로 그 증축여부 및 신위배열등이 다루어져 왔다²⁾. 그러나 창건 당시 정전의 건축형식이 어떤 기준에서 계획되었고, 太祖實錄에서 언급되는 건축형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건축사적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창건 당시 종묘 정전의 건축형식을 규정한 계획원칙과 그 원칙의 건축사적 문맥은 무엇인지 하는 창건 당시 종묘 정전 건축형식의 起源 문제를 다뤄 보고자 한다.

우선 실록기사의 鮮初 종묘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起源의 유형과 그 건축형식 기술에서 보이는 의문점을 정리하여 분석의 틀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단서로 唐·宋·元代의 廟制 및 麗代의 종묘건축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비교·분석하여 창건 당시 종묘 정전 건축형식의 전거와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2. 기원1 : 唐代 開元연간 廟制

2.1 기원의 유형과 그 해명 단서

창건 당시 종묘 건축형식의 전거가 고려시대 종묘건축으로부터 연원되었을 것이란 막연한 추정이 이루어져 왔다³⁾. 이러한 추정의 밑바탕

1) 金東旭, 宗廟의 沿革, 「종묘정전」,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9. 또한 선조40년의 종묘재건시 논의는 拙稿, 17세기 七林의 廟寢制 인식과 書院영건, 서울대TD, 1999. 제2장을 참조할 것.

2) 종묘건축의 건축적 변천에 대한 연구는 조병수·김동욱, 종묘건축의 복원적 연구, 논문집 제20집, 경기대학교, 1987. 김동욱, 조선시대 종묘 정전 및 영녕전의 건물규모의 변천, 문화재 제21호, 문화재관리국, 1988. 그리고 신위봉안의 변천에 대해서는 이강근, 조선왕조의 신전 종묘, 미술사학연구 216, 한국미술사학회, 1997.

3) 창건 당시의 형식이 고려시대 종묘를 근거로 계획되었을 것이란 판단은 태조원년 9월 戊申, 고려의 종묘를 허물고 그 자리에 조선왕조 종묘를 창건하자는 기사나 태종 10년 5월 己卯, 東·西廡 添設 時 논의에서 功臣殿의 제도는 고려조의 太廟 제도를 따왔다는 南在의 언급 등에서 막연하게 추정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실록기사에는 고려의 종묘와 창건 당시 종묘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명확

에는 어느 시대건 개국 초기의 건축형식은 前代로부터 단순히 인습되며 그 성숙기에 이르러서야 자기색채를 지닌 형식으로 전환된다는 일반적인 문화계승 논리가 전제되고 있다.

그러나 창건 당시 종묘건축의 경우 이 같은 논리로 그 기원 문제를 재단하기에는 문제가 좀 더 복잡한 것으로 보인다. 창건시 종묘계획에 참여한 南在가 功臣堂의 위치를 논하며

그 당시에도 禮文을 상고하였으나 밝히지 못하고 오직 고려의 태묘제도를 따랐을 뿐...⁴⁾

이라고 한 언급은 종묘건축의 기원 문제가 지닌 미묘성을 드러내 준다.

즉 <禮文을 상고하여 그 전거를 기반으로 계획한 건축형식>과 <禮制상의 전거가 없어서 그대로 인습한 고려 종묘의 건축형식>으로 구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건 당시 종묘 건축형식의 기원 문제는 '새롭게 상고된 형식'과 '인습된 형식'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새롭게 상고된 형식과 결과적으로 인습된 형식 그 각각의 범위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 태조 원년의 즉위교서에 나타난 종묘관련 기록은 이 구분상의 기준을 시사해 준다.

즉위교서를 보면

천자는 7묘, 제후는 5묘이며, 宗廟는 왼쪽, 社稷은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이 古制이다. 前朝(고려)의 종묘에서는 昭穆의 차례(序)와 堂寢 제도가 經과 맞지 않았고, 또 도성 밖에 위치하였다. (중략) 禮曹에게 상세히 구명하고 의논케 하여 (그 결과를) 定制로 삼을 것이다⁵⁾.

라고 하여 고려 종묘의 폐단을 세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이는 거꾸로 새로운 종묘의 계획 방향이 그 폐단의 시정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①昭穆의 차례를 제후 5廟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서차하는 것, ②堂寢 제도를 經典에 附合되도록 하는 것, ③古制의 규정처럼 都城內 왼쪽에 종묘를 배치하는 것등 세가지 항목이 바로 계획원칙의 大綱이며 동시에 '새롭게 상고된 형식'과 '인습된 형식'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렇게 보면, 우선 창건 계획시 고려 종묘가 개선 혹은 인습의 기준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상고된 형식과 인습된 형식의 범위가 좀 더 세분될 수 있음을 뜻한다. 즉 ① 고려 종묘의 건축형식 중 禮에 부합되지 않아 새롭게 해석된 형식, ②禮制上 반드시 필요하지만 고려 종묘에 존재하지 않아 새롭게 설정된 형식, 그리고 ③고려 종묘만의 독자적인 제도가 그대로 인습된 형식등, 세가지 유형의 기원으로 정리될 수 있다.

또한 상기 昭穆序次와 堂寢制 云云 역시 正殿의 구체적인 건축형식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원칙이란 점도 주목된다. 소목서차는 단순한 신주 배열상의 문제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는 廟數 산정, 享禮절차, 승부(升祔) 및 체천(遞遷)의 규정과 관련되므로 정전의 '室數', 조주(祧主) 봉안의 '夾室', 협제(祫祭)를 위한 '前堂'의 설치등, 종묘 정전의 건축형식과 직결된다. 따라서 소목서차 방식의 새로운 선정은 廟室數, 夾室, 堂의 건축구성등 종묘의 堂寢制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정전의 건축형식인 堂寢制를 '經'에 부합되도록 하겠다는 선언은 바로 '禮經'을 전거로 종묘 정전의 건축형식을 계획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창건 당시 종묘의 건축계획에서 '禮文'등의 철저한 상고를 통해 '새롭게 해석'되거나 '새롭게 설정된' 형식은 바로 소목서차, 享祀절차등에 좌우되는 太室, 夾室, 翼室등의 정전 건축형식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고려의 종묘제도가 이미 禮文에 그 전거를 두었던 형식, 혹은 禮文에는 없으나 독자적으로 성취했던 형식 따위는 창건 당시의 이해정도에 따라 '인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어떤 禮文이 계획의 전거가 되었

한 언명은 없다.

4) 太宗實錄 卷19, 10年 5月 己卯. "廟垣外西南隅 有虛堂... 配享功臣之堂... 何如此其疎略乎... 南在... 其時亦考禮文而未得 唯倣前朝大廟之制".

5) 太祖實錄 卷1, 元年 壬申 7月 丁未, p.22ab. "天子七廟 諸侯五廟 左廟右社 古之制也. 其在前朝 昭穆之序 堂寢之制 不合於經 又在城外. 仰禮曹詳究擬議 以爲定制"

고, 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었을까? 고려에서 전승되었던 건축형식은 무엇이고, 또 이는 어떻게 실증될 수 있을까? 이 문제들은 태조실록의 창건 당시 중요관련 기사로부터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태조 4년 9월 경신일에 준공된 종묘에 대해 태조실록에는 그 건축제도가 다음과 같이 기술되고 있다.

太廟의 太室은 7칸이며, 堂은 같이 하되 室은 달리 하는(同堂異室) 제도로 하였다. 내부는 石室 5칸, 좌우 翼室 각 2칸으로 하였다. 功臣堂 5칸, 神門 3칸, 東門 3칸, 西門 1칸이다. 사방을 둘러 담장을 쌓았다. (담장) 밖에는 神廚 7칸, 享官廳 5칸, 좌우 行廊 각 5칸, 남쪽 행랑 9칸, 齋宮 9칸이 있다⁶⁾

우선 정전의 室數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후의 경우 廟數는 5廟가 되는 것이 禮經의 규정이라 할 때 1칸을 1실로 본다면 당연히 5

칸으로 구성되어야 禮制에 충실한 것이 된다. 상기한 창건 당시 규모 기술에서 ‘石室 5칸’이란 규정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전의 규모는 7칸이라 했으므로 남는 2칸이 문제가 된다.

부묘된 神位가 神室을 다 채우게 되는 성종 때까지의 신위봉안을 보면 조선 종묘 정전의 太室 1실은 1칸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세조 부묘 전까지는 서쪽 끝 1칸을 남겨두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 즉 이를 근거로 보면 석실의 위치는 7칸 중 동서 각 1칸을 제외한 중앙부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石室의 명칭이 붙지 못하는 동서 각 1칸의 室이 어떤 근거에서 구성되었고,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동서 각 1칸의 실을 親盡되어 祧遷된 신주가 봉안되는 협실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창건 당시 정전에 이미 夾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면 이러한 해명도 모호해 진다. 또한 형제계승시 동일소목으로 처리한다는 원칙 때문에 廟數에 들지 않는 동일昭穆의 室을 미리 添設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럴 경우에도 굳이 7칸으로 한정시킨 이유를 알 수 없다.

창건 당시 종묘 정전의 건축형식 기술에서 초래되는 의문은 다시 石室 云云과 좌우에 翼室 각 2칸을 둔다는 규정에서 더욱 증폭된다. 여기서 石室이란 무엇을 말함인가? 또 좌우 각 2칸의 翼室이란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이 모두는 혹 계획담당자의 임의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일까? 전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바로 창건 당시 종묘 정전의 계획 典據가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歷代 종묘 建築史란 좀 더 넓은 문맥에서 이 문제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6) 같은 책, 卷8 4年 9月 庚申, p.83ab. “太廟太室七間 同堂異室. 內作石室五間 左右翼室各二間. 功臣堂五間 神門三間 東門三間 西門一間. 繚以周垣. 外有神廚七間 享官廳五間 左右行廊各五間 南行廊九間 齋宮五間”. 또한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正殿의 평면형식, 즉 당침제로 同堂異室 형식이 채용되었다는 사실이다. 同堂異室制가 後漢의 明帝 이후 고제인 都宮制를 대체하여 역대 왕조의 종묘 건축형식으로 채용되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同堂異室制가 잘못된 형식임을 들어 古制인 都宮制를 회복하자는 주장은 北宋代, 南宋代, 元代, 明代 등에서 반복되었고, 조선에서는 宣祖 40년의 종묘제전 논의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졸고, 앞의 논문, 제2장 참조) 鮮初의 경우 同堂異室制가 三代의 제도가 아님을 들어 復古해야 한다는 주장은 태종 15년 종묘의 廟室을 넓게 고치자는 의논과 함께 하륜이 제기한 적이 있었고(太宗實錄 卷29, 15年乙未 正月乙卯), 또한 학문적으로는 이미 1397년(태조 6년)에 初刊된 權近의 『入學圖說』 ‘諸侯昭穆五廟都宮之圖’에서 일정하게 都宮制가 이해되고 있었다. 그러나 都宮制로의 復古가 朱子禮學에 대한 이해정도와 밀접하게 관여되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인 반면 鮮初의 예학 이해수준은 唐代的 通典이나 開元禮, 宋代的 전례가 자세한 文獻通考를 전거로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都宮制의 의의는 명확하게 인식될 수 없었다. 經에 부합되는 堂寢制로 종묘 정전을 계획하겠다는 즉위교서의 언명 자체는 따라서 도궁제로까지 소급되는 고계회복이라기 보다 소목의 위차도 혼란스럽고 행례절차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고려 종묘제도의 폐단을 唐代와 宋代의 전례에 기초하여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동당이실제를 당침제로 수용한 것은 이러한 이해수준과 역사적 단계에선 자연스런 결과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7) 성종실록, 성종1년 3월 경자. 세조를 부묘하면서 환조를 그 때까지 비어 있었던 서쪽 끝의 神室에 옮겨 봉안하고 제7실에 세조를 부묘하고 있다. 즉 서쪽 끝 1칸을 제외한 채 신주가 봉안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2 唐 開元연간 廟制규정과 太室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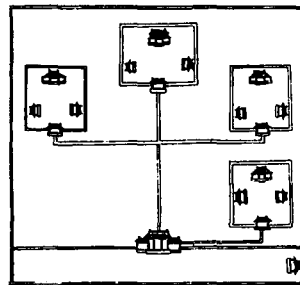
종묘건축에 대한 이해는 禮學의 인식수준과 직결된다. 따라서 종묘가 창건된 태조 4년의 예학 수준이 문제가 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太祖연간에 행해진 五禮가 주로 高麗의 古今詳定禮, 唐代的 開元禮에 기반을 두고 있었음이 지적된다⁸⁾. 조선의 독자적인 五禮제정은 태종대를 거쳐 세종대에 완성되었다는 사실에서 보면, 태조연간에는 고려의 禮書와 중국의 서적, 특히 唐과 관련된 唐書, 開元禮, 通典등과 宋과 관련된 宋史, 文獻通考등이 검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⁹⁾.

이러한 서적들에는 역대 종묘건축에 대한 제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태조4년 종묘 창건시 '禮文'들이 참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종묘 창건 이전에 이미 중국에서 勅撰되었던 洪武禮制, 大明集禮등의 明初 禮書가 참고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¹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홍무예제에는 종묘에 관한 규정이 보이지 않으며, 대명집례에는 草創된 都宮制 형식의 明 태묘가 기술되고 있어 同堂異室制인 창건 종묘 정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¹¹⁾. 종묘의 건축형식과 관련해서는 참고 가능성이 희박한 셈이다.

따라서 선초 예학의 이해 정도가 高麗와 唐·宋의 國家典章에 주로 기초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보면, 창건 당시 종묘건축의 계획에서 高麗·唐·宋代의 종묘가 주된 참조대상이 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즉위교서의 비판에서도 나타났듯 고려의 종묘건축이 모범으로 간주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禮制에 충실한 종묘건축을 모색하기 위해 역대 종묘건축, 특히 唐·宋의 종묘건축을 철저하게 검토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宋史나 文獻通考의 관련기록들을 분석해 보면 송대의 태묘가 '長安의 제도', 즉 唐代的 太廟를 모범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또 좀 더 넓은 문맥에서 종묘건축사의 변천을 보더라도 동당이실체가 정착된 후 종묘의 건축형식과 儀式에서 가장 정비된 체제를 보여주고 있는 전범이 바로 唐代 開元연간의 勅令과 禮制이다. 이는 후대 宋·元代 종묘 계획에 있어 종종 모범으로 간주되곤 하였다.

唐代 종묘의 구체적인 건축형식과 그 모범으로서의 위상에 대해서는 宋初 종묘의 건축형식의 논의과정에서도 확인된다. 이를 보면



홍무9년(1376년, 禡王2년)에는 다시 都宮制인 4廟를 同堂異室制로 변경하여 9칸 9실의 廟制로 중건하였다. 이 때 元代的 종묘제도를 수용하여 前殿後寢制로 종묘를 건립하였고 신주는 후면의 寢殿에 봉안하되 高祖를 중앙에 두는 左右昭穆 서차로 배열되었다. 四時祭에는 神主를 후면 寢殿에 그대로 두고 衣冠만을 전면 正殿에 모셔 향사하였는데, 이는 정전에 신주를 봉안하고 향사한 이전 역대 종묘제도로부터 一變된 것이었다. 明 태묘는 太宗의 遷都 후 다시 북경에 남경의 廟制 그대로 건립되었고, 이후 統主봉안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침전 뒤에 祧廟를 건립, 그 건축제도가 다시 한번 변경되었다. 萬斯同, 廟制圖考, 文淵閣四庫全書 662, pp.226-227.

8) 이범직, 한국중세예사상연구, 일조각, 1991, pp.229-230.

9) 같은 책, p.202.

10) 洪武禮制가 社稷, 風雲雷雨山川城隍, 歷代帝王陵寢, 里社, 鄉厲 등에 대한 祭祀禮式, 文武百官의 服色, 階勳등이 간략하게 정리된 소략한 예서인 반면(李賢求, 國譯 洪武禮制, 回想社, 1986) 大明集禮는 五禮의 체계에 맞추어 禮制가 정리된 방대한 예서이다. 따라서 洪武禮制는 名山, 大川에 대한 제사의식 제정(정종2년 12월 임자), 주,부,군,현의 사직단 제사 제정(태종6년 6월 계해)등에 참조되었다. 大明集禮는 洪武3년(1370년, 공민왕19년)에 勅撰된 예서로 嘉靖9년(1530년, 중종25년)에 明 世宗에 의해 인간되어 中外에 반포되었다(明集禮, 文淵閣四庫全書 649, 明集禮原序, 明集禮目錄). 대명집례가 실록에서 처음 나타나는 것은 세종22년 1월 신해일, 2월 정유일의 기사인데, 세종은 대명집례가 반포된 책이면 秘藏이라 문제가 된다며 구태여 요구치 않겠다 하고 있다. 이는 결국 당시까지도 大明集禮를 참고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11) 明의 태묘제도는 명 태조 洪武원년에 四代를 추존하여 당시 수도였던 南京에 4廟를 '1神主 1廟制'인 都宮制로 건립하였다(아래 그림).

송태종 태평흥국 2년, 유사가 말하길, 唐나라 제도를 살펴보면, 長安의 태묘는 모두 9묘로써, 동당이실입니다. 그 제도는 21칸으로 모두 우진각(四注)이고, 동서에 협실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전후면에 각각 계단이 3개씩 있고, 동서에는 각각 측계(側階)가 3개(다른 글에는 2개로 되어 있다, 필자)씩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태묘는 4실로써 1실 당 3칸입니다. 지금 태조를 승부하면 공히 5실을 이루게 됩니다. 장안의 제도에 따라 동서에 협실을 남기고 그 외 나머지 10칸은 나누어 5실을 만들어 1실 당 2칸으로 하소서 라고 하니, 이를 따랐다¹²⁾

라고 하여 唐代 종묘의 太室數, 좌우 夾室제도, 계단구성등 구체적인 건축형식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에 준거하여 宋初 종묘의 건축형식을 결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唐代 開元연간에는 百官들의 廟制를 칙령으로 규정하였는데, 여기에 종묘를 구성하는 일반원칙이 기술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唐代 開元 12년(724)에 만든 슈을 보면,

(전략) 廟의 제도는 3품 이상은 9가(架)로 하고 하(廈)는 양 측에 둔다. 3廟의 경우는 5칸으로 하고 가운데에 실 3개를 둔다. 좌우의 하(廈)는 1칸이며, 앞과 뒤는 비우고, 이중 두공과 조정(藻井)을 두지 않는다. 실에는 모두 석실(石室) 하나를 만드는데, 서쪽 벽에서 남쪽 가까이 3분의 1 지점에, 바닥부터의 거리는 4척으로 하여 신주 2위를 놓는다. 廟는 담으로 사방을 두르고, 南門과 東門을 만든다. 문옥(門屋)에는 실 3개를 만드는데 윗 칸은 모로 한다. 묘의 동쪽으로 조금 남쪽에 다 신주(神廚)를 증건하고, 재원(齋院)은 동문 밖 조금 북쪽에다 증건하는데, 그 제도는 묘를 넘지 못한다¹³⁾

라고 하여 廟數에 따른 廟 칸수(間數)의 결정과 감실제작 방식, 廟 부속시설인 神廚, 齋宮등의 위치등이 언급되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廈'라는 좌우 각 1칸의 공간을 두어 묘의 칸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규모결정 방식을 따른다면 5묘의 경우 중앙의 5묘=5칸과 좌우 1칸씩의 廈를 포함, 전체 7칸이 됨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감실을 '石室'이라 이르고 이를 서쪽 벽의 남쪽, 즉 室의 '輿' 위치에 시설하고 있음도 주목된다¹⁴⁾. 서쪽 벽 남단부에 제작되는 石室의 위치로 볼 때 西上東向의 원칙이 唐代 廟制의 신위 서차방식으로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唐代 개원년간의 廟制 칙령이 백관들의 家廟 건립 규제이긴 하나, 좌우 1칸의 빈 공간을 부설하여 廟室의 칸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나 石室이란 용어, 南門(神門)과 東門의 3실=3칸 구성, 東門 바깥에 위치하는 齋院(齋宮)과 神廚의 배치방식등은 태조4년의 종묘 창건기사에 나타나는 용어나 내용에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宋初에 논의된 唐 태묘의 건축형식 중 정면 3개의 계단과 東西에 설치된 側階, 東西 각 1칸의 夾室 구성 역시 종묘 정전의 건축형식과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조선 종묘 祭禮儀式的 골격이 唐代 開元禮에서 기초된 것이란

逾於廟". 또한 이 기록은 선조40년 종묘재건 논의시 역대 종묘의 건축제도를 정리한 홍문관의 상차에서도 재삼 거론되고 있어 개원년간 칙령의 위상을 짐작케한다. 承政院日記, 宗廟儀軌(上), 서울대학교 규장각.

14) 京城 내 私廟 건립을 금지한 肅宗 5년(845)의 칙령을 완화하면서 내려진 大正 5년(851)의 칙령에는 상기한 개원년간의 廟制 규정이 다시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廈와 石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즉 "3실의 廟制는 합하여 5칸을 만든다. 그 중 3칸은 나누어 3실을 만들고 양 쪽의 廈 각 1칸은 비워 놓는다. 앞 뒤 역시 비워 놓는다. 실 마다 내부에는 서쪽 벽에서 남쪽 가까이 3분의 1 지점에, 바닥부터의 거리는 4척으로 하여 塼室 하나를 내는데 돌(石)로 만들고 신주 2위를 수용할 수 있게 한다. 廟의 담장은 합하여 있고 南門과 東門을 내는데 아울러 門屋을 둔다. 나머지는 開元禮와 曲臺禮에 준거하여 定制로 삼는다." "其三室廟制 合造五間 其中三間 隔爲三室 兩頭各廈一間虛之 前後亦虛之 每室中西壁三分之一 近南去地四尺 開一塼室 以石爲之 可容兩神主. 廟垣合開南門東門 並有門屋. 餘並准開元禮及曲臺禮爲定制". 唐會要上, 卷19 百家家廟, 歷代會要第一期書 第五冊, 世界書局印行, p.391.

12) 馬端臨, 文獻通考 卷93 宗廟考3, 文淵閣四庫全書612, p.245. "太宗太平興國二年正月 有司言, 按唐制 長安太廟 凡九廟 同殿異室. 其制二十一間皆四柱(愚按一作注). 東西夾室各一. 前後各三階. 東西各三(愚按一作二)側階. 國朝太廟 四室室三間. 今太祖升祔 共成五室. 請依長安之制 東西留夾室 外餘十間 分爲五室 室二間. 從之". ()안의 一作은 宗廟儀軌 廟制편의 承政院日記임. 따라서 약간의 出入이 있다.

13) 新唐書 卷13, 志第3 禮樂3, p.346. 경인문화사 영인본. "廟之制 三品以上九架 廈兩旁. 三廟者 五間 中爲三室 左右廈一間 前後虛之 無重拱藻井. 室皆爲石室 一於西墉三之一 近南 踞地四尺 容二主. 廟垣周之 爲南門 東門 門屋三室 而上間以廟. 增建神廚於廟東之少南 齋院於東門之外少北. 制勿

점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유사성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창건 당시 종묘 정전의 건축형식에서 보이는 태실 7칸의 算定 근거와 중앙부 5칸 石室의 기능, 그리고 5칸 석실 좌우 각 1칸 공간의 설정등은 모두 唐代 開元연간의 廟制 규정에서 기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앞과 뒤는 비우고 이중두공과 조정을 두지 않는(前後虛之無重拱藻井)” 좌우 각 1칸의 ‘廈’가 어떤 성격과 용도의 공간이며, 東西 양단에 설치되는 1칸 ‘夾室’과는 또 어떤 차이를 갖는가 하는 점이다.

‘廈’는 대략 세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①지붕(屋)과 관련된 용례로, 지붕 사면의 아래 부분을 지칭하거나 팔각지붕 같은 특정형태를 뜻한다. ②결방이나 익랑, 행랑같은 부속공간의 의미로 쓰인다. 즉 廈는 廂房, 夾室, 門廡, 廊舍(한쪽 변이 터진 건물), 旁屋으로 풀이된다. ③건물의 웅장함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크고 높은 건축물’의 뜻으로 해석된다¹⁵⁾.

15) 中文大辭典 第3冊, 中華學術院, 1989, pp.1305-1306. 또 漢語大詞典 上卷, 漢語大詞典出版社, p.1973. ① 지붕(屋)이란 뜻은 說文解字등 여러 책에서 보인다. 팔각지붕이란 해석은 田中 淡이 정현의 夏屋 주석을 근거로 주장한 것이며, 또 中國建築史編輯委員會編의 中國建築概說에서도 唐會要 주택규제의 ‘廈兩頭’를 특정 지붕형태로 해석하고 있다(양금석 譯, p.86. p.138). ② 결방이란 뜻 역시 여러 곳에서 보인다. 鄭玄은 禮記 檀弓의 夏屋(夏屋)에 대한 주석에서 “夏屋은 지금의 門廡이다. 그 형상은 양측이 넓으면서 낮다”(禮記正義, 第8卷 檀弓上, 十三經注疏上, 中華書局, p.1292. “夏屋 今之門廡也. 其形 旁廣而卑”)고 하여 夏(廈)를 門 좌우의 행랑과 유사한 지붕이 넓고 낮은 건물로 묘사하였고, 顏師古는 “중분(重禁)은 바로 지금의 廊舍이니, 한쪽 변을 비워내서 만든 兩夏”(漢書, 列傳 卷七十六 趙尹韓張兩王傳 第四十六 張敞, 경인문화사 영인본; p.3225. “重禁 即今之廊舍也 一邊虛爲兩夏者也”)라 하여 한 쪽이 개방된 廊下로 그 뜻을 풀이하였다. 또 훨씬 후대인 清代 李百川 (약 1720-1771후)의 소설 綠野仙蹤에서는 “正房 3칸이 있고, 東西에는 각각 廈房이 있다. 여기가 학생들이 무리지어 독서하는 곳이다”라 하여 ‘廈房’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이를 漢語大詞典에서는 四合院의 東西 양측에 위치하는 독립된 ‘廂房’으로 해석하고 있다(李百川, 綠野仙蹤 第六回, 古本小說叢刊. 第一輯, 中華書局, 1991. “見有正房三間, 東西各有廈房, 是衆學生讀書之處”. 漢語大詞典 上卷, 漢語

開元연간의 廟制 규정에 나타나는 廈는 두 번째 결방의 의미를 강하게 띄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뜻을 지닌 용례를 좀 더 넓은 문맥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宋代 濮安懿王의 園廟 기술에서는 “廟 三間 二廈¹⁶⁾”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의 正廟 3칸에 좌우 결방 각 1칸의 단일 5칸 건물이거나 정묘 3칸 1채와 그 전면 동서 익랑 2채로 해석될 수 있다. 어느 것이거나 신주 1위를 모시는 園廟이므로 祧主를 보관할 夾室 기능은 설정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廈가 廟制의 夾室과는 다른 기능의 것임이 확인된다.

또宋代 ‘臣庶室屋制度’에서도 “庶人舍屋 許五架 門一間兩廈而已¹⁷⁾”라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문 1칸 좌우에 부속된 행랑채이거나 문 안쪽 마당을 에워싸는 익랑 2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심지어 문 1칸에 지붕은 兩廈(팔각지붕)로 한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 지붕형상의 해석을 제외한다면 여기서도 어느 것이건 廈가 死者의 공간(陵廟) 뿐만 아니라 生者の 공간(舍屋)에도 구성되는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廈의 기능이 명료하게 풀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廟의 건축형식이 生時의 거처를 그대로 본 뜬 것이란 점에서 볼 때, 廈는 生者の 주거형식에서 보이는 ‘廂’이나 결방(旁室)을 廟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추정된다. 특히 개원례의 廈는 명확히 正室 좌우에 설정되는 旁室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는 실상 廟寢制 형식의 ‘東·西廂’에 비견될 수 있다. 古制인 묘침제의 遺制인 셈이다. 廟寢制에서 東·西廂이 行禮者를 위한 대기처이거나 祭器등의 보관 장소로 ‘夾室’과 구분되는 공간이란 점에서 보면, 廈 역시 비슷한 기능을 지녔을 것으로 추

大詞典出版社, p.1973.) 즉 清代에는 결방의 뜻에서 날개체의 뜻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음을 볼 수 있다. ③ 큰 집이란 뜻은 주로 上樑文의 투식(套式)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6) 宋史, 志卷123, 禮26 凶禮2 濮安懿王園廟, p.2876.

17) 같은 책, 志卷154 志第107 輿服6 臣庶室屋制度, p.3600.

정된다.

선조 종묘 창건 당시 廈가 어떻게 이해되었을지는 일종의 조선중기 中韓사전인 四聲通解(1517년)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四聲通解에서는 廈(廈)에 대해

旁屋, 今俗呼“披廈”. 협실. 大屋¹⁸⁾.

이라 하여 한자로는 곁채(旁屋)와 큰 집(大屋), 중국속어로는 ‘披廈’, 한글로는 ‘협실’로 주석하고 있다. 廈를 지금까지 살펴본 의미대로 주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창건 당시에 廈는 祧主 보관의 ‘夾室’로 이해되었던 것일까?

이는 창건 당시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은 夾室의 설치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창건 당시 夾室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廈가 祧主 보관의 공간으로 설정되지 않았을 것임은 자명하다. 영녕전의 건축형식이 당시의 종묘 정전 형식을 그대로 본 뜬 것이라는 기록과 國朝五禮儀序例의 영녕전 그림에서 각 <익실2칸+협실1칸>이 좌우에 도시되어 표현되고 있는 점, 그리고 序禮의 종묘 도설 및 광해군대의 재건 종묘도에는 협실이 표현되지 않았으나 영조대 종묘도에는 협실이 표현되었고 그 사이 협실 1칸을 添設했다는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창건 당시 太室 좌우에 각 <익실 2칸+협실 1칸>이 구성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¹⁹⁾.

따라서 창건 당시 종묘 정전의 계획에서 廈는 개원례의 규정에서처럼 좌우 곁방(旁室)의 미의 東·西廂기능으로 설정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창건 당시로부터 멀어지면서 그 원래의 계획근거들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고, 祔廟되는 묘수가 증가됨에 따라 廈로 설정된 좌우 각 1칸의 공간이 太室로 용도 변경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쪽 벽에 石室을 설치한다는 개원연간

의 규정에 따라 신위는 西上東向을 원칙으로 태실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²⁰⁾. 先代일 수록 서쪽에 위치하여 동향하는 신위봉안의 문제점은 주자에 의해 날카롭게 지적되었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선조 40년의 종묘재건 논의를 거치면서 ‘西上南向’의 신주로 변경되었다²¹⁾.

지금까지 창건 당시 종묘 정전의 太室형식이 唐代 開元연간의 廟制에서 그 계획원칙이 마련되었음을 살펴보았다. 開元연간의 廟制가 주자예학과는 다른 또 하나의 정점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결국 중화문화권이 성취하였던 종묘 정전 건축형식의 보편적 규정에 창건 당시의 종묘 정전이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주자예학을 통한 보편성의 획득은 士林의 시대인 17세기에 書院 영건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창건 당시 형식의 기원에 대한 의문은 개원연간의 규정으로만 모두 해소되지 않는다. 그것은 ‘좌우 翼室 각 2칸’의 설치 근거와 관련된다. 이 <익실 각 2칸>의 구성이야말로 漢·唐·宋·元·明代 등 역대 왕조의 종묘 정전에서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형식이기 때문이다. 이 형식의 기원은 바로 고려의 종묘 정전 형식에 맞닿아 있다.

3. 기원2 : 충선왕의 종묘 정전 改作

3.1 고려와 鮮初 종묘 정전의 연관성

20) 國朝五禮儀序例 卷1 吉禮 壇廟圖說, 宗廟에 “每室右壁作陪室 並東向右上.”이라 하여 개원연간의 石室 규정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창건 이후 성종대까지 종묘 정전 태실의 改作기록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감실 설치의 창건 당시의 제작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21) 李肯翊, 燃藜室記述 別集 卷1 祀典典故에서는 “宣祖二年 己巳. 正廟主南向之禮. 先是廟制南向 廟主東向. 至是始正之(기사년은 선조3년임, 필자)”라 하여 선조 2년에 廟宇는 남향인데 신주는 동향이었던 것에서 신주의 향이 남향으로 바로잡혔다고 하고 있으나 해당연도나 선조3년의 실록에는 관련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아마도 당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던 文昭殿의 신주배열 논의에 혼란된 것으로 보인다. 東向의 신주 배열이 이후 선조40년의 종묘재건 논의에서 날카롭게 비판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때까지도 向이 변경되지 않고 지속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18) 四聲通解 下 p.31a. 박재연, 조선시대 중한사전 2차 시고본, 선문대학교 중국학과, 1998.에서 재인용.

19) 夾室이 창건 당시 건축형식임을 밝히고자 한 시도는 拙稿, 앞의 논문, 제1장 참조할 것.

고려시대 종묘의 건축형식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遺址를 확인할 수 없는 형편에서 가능한 방법은 高麗史 등의 문헌을 통한 연구이다.

고려조 종묘 정전의 구체적 건축형식을 간접적으로 상고할 수 있는 문헌자료는 高麗史 禮志의 '禘祫親享儀'이다. 이는 '禘'제사와 '祫'제사의 행례절차를 정리한 毅宗代(1146-1170)의 기록인데, 구체적인 건축형식을 기준으로 神位배설과 樂器진설, 행례자의 위치등이 묘사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면 종묘 정전의 건축형식이 어느 정도 재구성될 수 있다.

봉안된 신주와 조천된 신주 모두를 太祖의 廟에 모아 향사하는 '禘'제사의 경우 모든 신주를 太祖 廟의 堂으로 내어 태조를 서쪽에서 동향으로 중앙에 놓고 북쪽엔 昭位를 남쪽엔 穆位를 일렬로 설치하는 것이 古制의 진설방식이다. 고려조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신위진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건축형식과 관련된 항목들만을 정리해 보면²²⁾, 우선 신위 자리를 "堂上 戶外"에 마련하며, 登歌의 악기는 "廟堂上 前楹外稍南"에 북향으로, 軒歌의 악기는 "廟庭"에 설치하며, 王이 서는 位版은 "東階東南"에 서향으로, 飲福位는 "堂上 前楹外近東"에 서향으로 설치한다. 감찰어사의 자리는 둘인데 하나는 "西階下"이고 또 하나는 "東階下"이다. 또 문관은 "東門之內 廟庭東階下"에, 무관은 "西門之內 廟庭西階下"에 품계에 맞춰 열지어 선다. 생방(牲勝)은 "東門外"에 東門을 향해 정한다. 제사 하루전 왕은 궁궐을 출발해 "齋宮南門外"에 이르러 재궁에 들었다가 "東門外" 욕위(褥位)로 가서 배례하고 齋宮에 들어 묵는다. 생방위에서 회생을 씻고 검사한 후 담당자가 회생을 이끌고 "廚"로 가서 술과 가마를 보고 세척하는 것을 살핀다. 樂師들과 舞工들 중 堂에 올라앉아 있는 자들은 "모두 아래에서 신을 벗는다". 강신할 적에 왕은 태조 신좌 앞에서 서향하고 昭位 앞에서 북향하고 穆位 앞에서 남향한다. 饋食을 위해 담당자들이 祭物을 들고 "正

門"으로 들어가 "泰階"에 이른다. 제례가 끝나면 왕은 齋宮으로 돌아가 잠깐 머물렀다 "廟東門外" 욕위에서 재배하고 궁궐로 돌아간다.

이상의 항목을 토대로 고려 종묘의 건축형식을 추정해 보면, 우선 '戶外'와 '前楹外'가 공간적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 '戶'는 神室의 지계문을 말하는 것이고 '前楹'은 전면 기둥을 말하는 것이므로 지계문이 설치된 신실 벽 전면의 바깥에 위치하는 기둥이 된다. 따라서 신위는 '戶外'와 '前楹'의 사이 중간 부분, 이를테면 '퇴칸'의 공간에 설치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최소한 전퇴구조로 정전이 구성되었음을 말해 준다.

또한 '戶外'와 '前楹外'가 모두 '堂上'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樂工들의 경우 堂上에서 신발을 벗는다고 한 점에서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이 堂에는 登歌의 악기와 飲福位가 설치되며 堂에 오르기 위한 東階와 西階, 正門에서부터 곧장 이어진 중앙부분의 泰階가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堂下의 공간은 廟庭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廟庭은 지면과 동일한 레벨이 아니라 지면으로부터 높여져 동·서쪽에 계단이 설치된 넓은 공간으로 표현되고 있다. 왕의 位版이 東階의 동남쪽에 위치하므로 廟庭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공민왕 2년의 종묘제사에서 "왕은 月臺 동쪽에 선다²³⁾"고 한 것으로 보아 이 廟庭이 '月臺'라고도 불렸음을 알 수 있다.

廟庭 바깥으로 正門 및 東門과 西門이 설치되어 있었고 門이 3면에 설치되었으므로 나머지는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문관과 무관이 배열한다는 것으로 보아 동·서문과 묘정 사이에는 일정한 폭의 공간이 있었음이 추정된다.

또한 종묘의 외곽부에는 南門을 둔 齋宮이 있는데 왕이 도착했을 때 잠시 쉬었다가 東門 밖 褥位로 나간다고 한 것으로 보아 종묘 정전 일곽의 東門에서 남쪽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牲勝이 東門 밖에 위치하고 회

22) 이하 아래 인용부분은 高麗史 卷60, 志 第14, 禮2.

23) 같은 책, "...王入於月臺東...".

생을 검사한 후에 ‘廚’에 가서 祭器들을 살핀다고 한 것으로 보아 神廚가 東門 밖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齋宮이 東門에서 남쪽 아래에 있었다면 神廚는 당연히 東門에서 북쪽 위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高麗史 禮志의 ‘禘祫親享儀’에서 분석되는 고려 종묘 정전 일곽의 건축형식은 흥미롭게도 조선 성종조 國朝五禮儀序例에서 표현된 종묘 도설의 건축구성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 주목된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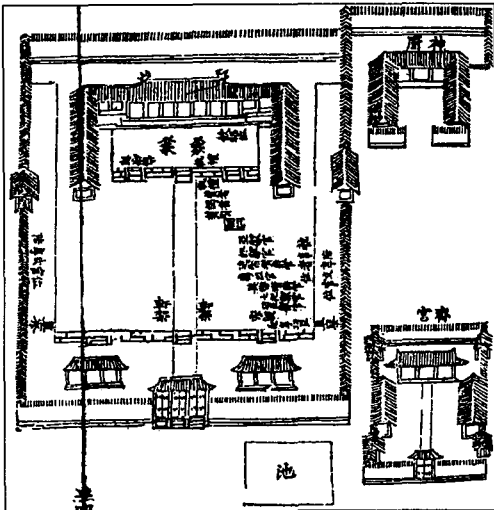


그림 1. 國朝五禮儀序例 卷1 壇廟圖說, 宗廟

版位, 登歌, 軒歌 약기의 위치, 기타 행례자의 위치, 正門·東門·西門의 구성, 廟庭인 月臺와 泰階·東階·西階로 구성된 ‘堂上’, 齋宮과 神廚의 구성등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려의 功臣堂이 담장 밖 서남쪽 모서리에 위치했다는 기록이나 태종 때 첨설된 東·西廂, 기타 행례자의 위치등을 살펴보면 그 차이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몇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유사성은

24) ‘禘祫親享儀’는 武臣政權 이전 고려 毅宗代의 당시 종묘 정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몽고의 침입으로 종묘가 소실되고 이 후 강화에서 환도한 원종대에 다시 종묘가 재건되었다. 따라서 조선의 종묘 正殿과 고려 의종대 종묘 正殿간의 유사성은 결국 원종대 고려 종묘의 재건 역시 의종대의 건축형식을 준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추정 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건 당시 종묘 정전과 그 일곽의 건축형식이 고려조에서 전송된 것이란 추정을 짚게 해 준다. 그렇다면 여기서 창건 당시 종묘 정전형식의 起源 유형 중 ‘인습된 형식’의 문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고려 종묘 정전형식에서의 인습은 두가지 가능성으로 요약된다. 하나는 그 형식이 禮文의 규정에 부합되었을 경우의 인습이고, 다른 하나는 그 형식이 禮文에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의 인습이다. 전자의 경우가 바로 ‘禘祫親享儀’에서 분석된 정전 일곽의 건축구성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禮文에 없는 제도나 형식은 결국 고려 종묘건축에서 내연된 잘못된 제도였거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성취해낸 결과였을 것이다. 잘못된 제도는 태종대 공신당의 위치변경처럼 개변되었을 것이고 나름대로의 근거를 지닌 것으로 간주된 고려의 독자적인 제도나 형식은 그대로 계승되어 지속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고려 종묘 정전 건축형식의 독자적 성과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고려 종묘건축의 변천사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3.2 고려 종묘 정전형식의 인습

高麗史를 면밀히 검토하면 고려의 종묘건축은 5단계의 획기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1. 고려시대 종묘의 주요 건축획기

①	成宗11년(992)의 종묘 創建
②	顯宗2년(1011)의 태묘 화재에 따른 顯宗18년(1027) 2월의 重修
③	元宗11년(1270) 강화도에서 개성으로 환도 후, 元宗13년(1272) 3월의 再建
④	忠宣王2년(1310) 9월의 5실제+동서 협실의 改建
⑤	恭愍王12년(1363)의 9室 신주 재봉안

이 5단계의 건축획기 중 주요한 건축변화의 계기는 ‘성종대의 創建’과 ‘충선왕대의 改建’으로 대별될 수 있다. 특히 鮮初의 창건 당시 익실 2칸의 설정 근거와 관련해서는 충선왕대의 改建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²⁵⁾.

충선왕의 종묘 改建은 高麗史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다.

충선왕 2년 9월에 태묘의 5실 동쪽과 서쪽에 夾室을 두었다. 惠宗과 顯宗의 2宗은 서쪽실에 봉안하였고, 文宗과 明宗의 2宗은 동쪽실에 봉안하였다²⁵⁾

충선왕 이전의 신위봉안은 成宗代 창건 당시 室數인 9室制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9실 규모는 還都 이후 元宗代의 재건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후 5廟라는 禮制가 천명되었음에도 창건 당시부터 줄곧 9실이 유지되었던 배경의 일단은 室數로 神主數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성종의 언명에서 이미 발견된다²⁷⁾. 즉 형제계승을 동일소목으로 한다는 원칙으로 인해 성종 당시 봉안될 廟數는 3廟에 불과했지만 실제 필요한 室數는 이미 6실이었던 상황이 太室을 9실로 결정지은 주요 배경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충선왕 이전의 신위 봉안을 보면 창건 당시 언급된 제후 5廟의 원칙은 쉽게 무너지곤 하였는데, 불천위를 廟數에 포함치 않는다 해도 신종을 升祔한 희종 2년, 강종을 祔廟한 고종 2년은 6廟였으며, 고종을 부묘한 원종대, 원종을 부묘한 충렬왕대는 천자의 廟數인

7廟였음을 볼 수 있다(그림2)²⁸⁾.

1	不遷	2昭	3穆	4昭	5穆	6昭	7穆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태조	혜종	현종	예종	인종	신종	강종	고종
충렬왕2년, 원종 부묘, 숙종 제천							

그림2. 충렬왕 2년의 7廟-9室 신위 봉안도

昭穆의 서차가 錯簡되기도 하고 廟數도 혼란스러웠던 이 같은 상황 하에 고려의 종묘를 改建하면서 충선왕은 우선 室數를 5室으로 줄이고, 또 東西 夾室을 두어 동쪽과 서쪽에 각 2位の 신위를 봉안하도록 하였다(그림3). 성종대 이후 줄곧 유지되었던 9室制의 종묘가 一變된 것이다.

西室	1	2穆	3昭	4穆	5昭	東室
不遷	①	②	③	④	⑤	權安
혜종	현종	태조	인종	고종	원종	충렬
충선왕2년 9월, 5묘+동서합실 정비→충렬왕 부묘.						

그림3. 충선왕 2년 종묘 改建시 신위봉안도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서쪽 실과 동쪽 실에 봉안된 신주들이다. 서쪽 실의 혜종과 현종은 不遷位로 毀廟되지 않는 신주이지만, 동쪽 실의 명종과 문종은 이미 親盡되어 毀遷된 신주이기 때문이다. 이를 태면 한쪽엔 世室 개념의 室이, 다른 쪽엔 夾室개념의 室이 병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毀遷主가 봉안된 것이 아니라 명종과 문종의 신위만이 봉안되었다는 것은 어떤 曲折에서 연유된 임의적인 봉안(權安)임을 알려 준다²⁹⁾.

결국 이러한 문종과 명종의 權安이란 사정을 고려한다면 東·西室의 설치는 祧主봉안의 夾室 개념이라기 보다 世室이나 權安개념에 좀

25) 주지하다시피 충선왕은 세자시절부터 원나라 大都에서 생활하였고, 傳位 후엔 연경에 萬卷堂을 지어 학자들과 교류했던 인물이다. 즉 충선왕은 자신의 말 대로 “大都의 모든 제도를 자세히 보았던”(즉위년 5월 신묘일 교서) 인물이었다. 그는 즉위 초부터 상당히 개혁적인 면모를 보이며, 종묘와 사직들을 修建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반드시 충선왕이 원의 大都에서 익힌 경험과 지식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충선왕 당시 원나라의 종묘제도는 至元17년(1280)에 건립된 태묘규모에서 침전이 불타 없어진(1302년) 상태였는데 그 건립당시의 건축형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前廟後寢이니, 정전은 동서가 7칸, 남북이 5칸이다. 내부는 7실로 나누었다. 정전의 섬돌(陛)은 2成이고, 계단은 셋이니, 가운데를 泰階, 서쪽을 西階, 동쪽을 阼階라 하였다. 寢殿은 동서가 5칸, 남북이 3칸이다. (후략)” “前廟後寢. 正殿東西七間 南北五間 內分七室. 殿陛二成三階 中曰泰階 西曰西階 東曰阼階. 寢殿東西五間 南北三間”. 元史 卷74, 志第25, 祭祀3, 宗廟上.

26) 高麗史 卷61 志第15 禮3. “忠宣王二年九月 太廟五室東西置夾室 安惠顯二宗于西室 文明二宗于東室”

27) 같은 권, “宜爲主立室 不可以室限神”. 의당 신주를 위해 실을 세워야지 室(數)로 神主(數)를 한정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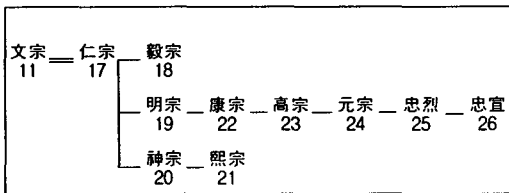
28) 희종 2년 당시는 ①태조-(불천위)혜종·현종-②문종-③선종·숙종-④예종-⑤인종-⑥신종의 6묘로 구성되었고(高麗史 61卷, 志第15, 禮3), 고종 2년 당시는 ①태조-(불천위)혜종·현종-②선종·숙종-③예종-④인종-⑤신종-⑥강종의 6묘로 구성되었다(高麗史 卷22, 世家第22, 高宗 乙亥 2年 10月 乙未).

29) 이를 仁宗이후 世系圖와 함께 좀 더 追察해 보면

더 가까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충선왕을 부묘하면서 인종을 체천하고 강종을 동쪽 협실에 임시로 봉안한 충혜왕 즉위년(1330)의 신위 서차(그림4)에 대해 典理佐郎 趙廉이 다른 序次방식(그림5)을 주장한 것에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조립은

우리나라의 소목 서차는 古制와 어긋남이 있습니다. 당연히 태조를 중간 실에 모시고 고종을 제1昭位, 원종을 제1穆位, 충렬왕을 제2昭位, 충선왕을 제2穆位로 하며, 혜왕과 명왕을 동쪽 협실에 모신다면 주나라 제도처럼 武王을 동북쪽 협실에 모신 전례와 같고, 현왕과 강왕을 서쪽 협실에 모신다면 주나라 제도처럼 文王을 서북쪽 협실 모신 전례와 같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혜왕과 현왕 두 신주는 동쪽과 서쪽에 分居하여 不遷주가 되고, 명왕과 강왕 父子 역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서 임시로 봉안하는 신위가 되어 禮에 편안하고 소목의 서차 역시 고제에도 합치될 것입니다³⁰⁾.

고 하여 左昭右穆 서차를 주장하며 동·서쪽의



明宗은 무신정권하 최충현의 등장과 함께 폐위되어 神宗(명종의 弟) 5년에 薨하는데, 신종 7년 부묘되어야 할 시점에서 신종이 薨하고 熙宗(신종의 長子)이 즉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회종은 仲父인 명종은 제쳐둔 채 親父인 神宗만을 종묘에 봉안하게 되었다. 그러나 회종이 최충현의 살해음모로 폐위되고 명종의 長子인 康宗이 즉위하게 되나 즉위 2년 만에 薨하자 뒤를 이은 고종이 親父인 강종만을 부묘함으로써 결국 명종은 종묘에 봉안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康宗 이후 고려왕실의 世系는 明宗을 大宗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명종의 종묘 未奉安은 줄곧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의 극심한 간섭에서 어느정도 여유를 갖게 되는 충선왕대에 와서 종묘의 改作과 함께 명종이 새롭게 부묘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명종이 새롭게 升祔되는 시점에서 그의 高祖인 文宗도 상징적으로 함께 봉안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0) 같은 책, 卷61, 志第15 禮3. “本國昭穆之序有乖古制. 宜以太祖居中室 高宗爲第一昭 元宗爲第一穆 忠烈王爲第二昭 忠宣王爲第二穆 惠王明王居東夾室 如周制武王居東北夾室之例 顯王康王居西夾室 如周制文王居西北夾室之例 如是則 顯惠二主分居東西爲不遷之主 明康父子亦分東西爲假安之位 於禮便而昭穆之序亦合古制”.

夾室을 주나라 文·武왕의 世室에 유비하고 있다. 즉 世室개념을 명백히 부여하고 그곳에 權安개념을 병존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西夾室	1	2昭	3穆	4昭	5穆	東夾室		
不遷	①	②	③	④	⑤	權安		
혜종	현종	태조	고종	원종	충렬	충선	명종	강종
충혜왕 원년, 충선왕 부묘, 인종, 문종 체천, 강종 權安								

그림4. 충선왕 부묘시 神位봉안 서차

西夾室	2穆	1穆	1	1昭	2昭	東夾室		
權安	不遷	⑤	③	①	②	④	不遷	權安
강종	현종	충선	원종	태조	고종	충렬	혜종	명종
世室·權安 개념과 左昭右穆 서차의 趙廉 案								

그림5. 趙廉의 左右昭穆서차 안

한편 당시 元의 宗廟도 祧主 봉안의 夾室을 아직 구비하지 못하던 단계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충선왕이 종묘를 改作한지 10여년 후인 至治3년(1323, 충숙왕10)에 와서야 태묘의 夾室 제도를 공식적으로 상고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기존 廟宇 앞에 신축 중이던 大殿 15칸에서 동서 각 1칸을 夾室로 만들게 된다³¹⁾.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충선왕의

31) 至治 3년 4월 6일에 태묘 夾室제도가 갖춰져 있지 못함이 지적되어 이를 議定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된 협실제도는 신축 중이던 大殿에 반영된다. 그리고 동년 6월에 太廟가 낙성되었다. 그 규모를 보면 “별도로 大殿 15칸을 지금의 廟 앞에 세웠다. 지금의 묘는 침전으로 사용하였다. 중간 3칸은 통틀어 1실로 하고, 나머지 10칸은 각각 1실로 하였다. 동서 양 쪽에는 벽을 쌓아 각각 1칸을 남겨 협실로 삼았다. 실은 모두 동서의 가로길이가 2장이었고, 남북 길이는 6칸으로 매 칸이 2장이었다. 궁성의 남쪽으로 조금 나가서 새로이 우물 2개를 건각 남쪽에 파고 정자를 지었다. 동남쪽과 서남쪽 모퉁이의 角樓, 남쪽의 神門, 동서쪽의 神門, 饌幕殿, 省儀殿, 獻官百執事 齋室, 중간의 南門, 齊班廳, 雅樂庫, 神廚, 祠祭등의 局은 모두 남쪽으로 옮겼다. 大次殿 3칸을 궁성 서북쪽에 건립하고, 동서쪽 樞星門 역시 남쪽으로 옮겼다. 동서쪽 樞星門 안쪽에 노부방(鹵簿房)이 4곳인데, 통틀어 50칸이다.” 元史 第74, 志 第25 祭祀3. “別建大全二十五間於今廟前 用今廟爲寢殿 中三間通爲一室 餘十間各爲一室 東西兩旁隙牆各留一間 以爲夾室. 室皆東西橫闊二丈 南北入深六間 每間二丈. 宮城南展後 擊新井二于殿南 作亭. 東南隅 西南隅角樓 南神門 東西神門 饌幕殿 省儀殿 獻官百執事齋室, 中南門 齊班廳 雅樂庫 神廚 祠祭等局 皆南徙. 建大次殿三間於宮城之西北 東西樞星門亦南徙 鹵簿房四所 通五十間”.

西世室	穆		穆		穆		穆		太祖의 昭		昭		昭		昭		昭		東世室					
	⑥		⑥		④		②		①		③		⑤		⑦		⑨							
	7,8房		6房		서1-3,4,5房		서1-1,2房		中室		동1-1,2,3,4房		5,6房		7,8,9房		10房							
태조	현종	熙	康	仁	順	宣	廟	景	成	定	光	戴	安	穆	德	靖	文	獻	睿	毅	明	神	高	혜종

이제현의 안 : 형제계승을 동일소목으로 하여 9실안에 房구분, 22位 봉안. 불천위는 동서세실에 봉안 추정됨.

그림6. 공민왕 6년, 이제현의 22位 左右 昭穆序次 방안

동서협실은 祧主 봉안의 협실 개념이라기 보다 世室과 權安이 결합된 개념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 각각 2位の 신주를 봉안했던 점으로 보아 東西 각 2실-2칸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충선왕은 원나라의 간섭 아래 제후는 5묘라는 규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당시 원나라의 종묘는 前廟 後寢制에서 寢殿이 불타고 前廟만 남아 있던 상황이면서도 동시에 7칸의 구조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고려 종묘가 9실제인 9칸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9실의 신위를 일시에 5실로 강등시키는 것도 대단히 어려웠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충선왕은 5실제의 5칸에다 현종과 혜종 같은 불천위를 모시는 東西 5실로 나머지 4칸을 개작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불천위가 봉안되는 世室은 廟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禮制를 적용하여 周制의 文武 세실처럼 그 형식을 동서 5실(협실)로 명확하게 강조했던 것이다. 따라서 종묘는 제후 5묘제를 준수하면서도 전체 9位=9廟의 신주를 봉안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예제를 준수하고 원의 견제를 막으면서도 고려의 전통을 유지하는 절묘한 해결책이었던 셈이다.

충선왕의 종묘 改作 이후 고려사에는 특기할 만한 종묘 관련 건축기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고려의 反元개혁정치가 본격화되는 공민왕 6년 8월에 李齊賢이 22位の 신주를 左右昭穆에 따라 모두 봉안하는 서차방식을 건의하며 당시의 5실 크기를 넓힐 것을 요청하는 기록이 주목된다³²⁾. 여기서 이제현은 불천위인 태조,

혜종, 현종을 제외한 23대 高宗까지 22위의 신주를 9실제 내에서 22개의 房으로 세분하여 봉안할 것을 주장하였다(그림6). 겉으로 언명되진 않았지만 결국 이는 충선왕이 개작한 5실제의 太室을 9실제로 增室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태조, 혜종, 현종을 불천위라 하면서도 실제 이들 신주가 어느 곳에 봉안되는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충선왕의 동서 5실2칸이 공민왕대에도 여전히 世室개념으로 수용되고 있었음을 함축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당연히 공민왕 6년 당시에도 동서 5실에는 혜종, 현종등의 불천위가 봉안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규모 공역이 요구되는 이제현의 건의가 수용되어 현실화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당시의 형세는 공민왕이 한양 遷都 의지를 피력하며 새 궁궐을 영건하는데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³³⁾. 흥건적의 침입으로 종묘의 신위를 옮겼다가 적 평정 후 다시 봉안하는 공민왕 12년의 신위 위치를 보면 이 문제가 좀 더 선명해진다. 還安시 각 室 樂章을 새로 지었는데 당시 봉안된 9位の 9실이 언급되고 있다.

각 室의 樂章은 <제1실-태조, 제2실-혜종, 제3실-현종, 제4실-원종, 제5실-충렬왕, 제6실-충선왕, 제7실-충숙왕, 제8실-충혜왕, 제9실-충목왕>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⁴⁾. 이를 (그림

之次 齊賢上議曰...

33) 같은 책, 卷39, 世家 第39 恭愍王 6年 正月 壬辰, 2月 己酉. 9年 7月 乙卯, 申未(白岳의 궁궐 영조). 11月 辛酉(白岳 新宮으로 移御). 10年 2月 申卯(교서를 내림). 移御에도 불구하고 宗廟는 여전히 송도에 있었다(12年 正月 丁未)

34) 같은 책, 卷70, 志第24 樂1. “恭愍王 十二年五月丁亥 還安九室神主于太廟 新撰樂章. 太祖第一室...”

32) 앞의 책, 卷61, 志第15 禮3. “六年八月 命李齊賢 定昭穆

4)의 충혜왕 원년 당시의 위치와 비교해 보면 權安되었던 명종,강종의 신주와 親盡된 고종의 신주가 毀廟되고 충숙,충혜,충목왕의 신주가 왕위계승의 순차대로 祔廟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이는 이제현의 건의가 수용되지 않았거나 혹 수용되었다해도 현실화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공민왕 12년의 9실=9位の 신주봉안은 논리적으로 네가지로 서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①충선왕대 이후 봉안방식을 그대로 따랐을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西上東向의 원칙으로 일렬 배치했을 가능성인데, ②정전 건축형식을 그대로 두고 서쪽 협실부터 신위 위치대로 일렬배치하는 방식, ③협실을 正室 형식으로 변경하여 협실 없이 정실 9실만으로 봉안하는 방식, 그리고 ④正室을 9실로 증설하여 협실은 비우고 서쪽 正室부터 봉안하는 방식의 총 네가지 가능성(그림7)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7. 공민왕 12년 還安시 신주 位次 추정안

이러한 序次방식 추정을 근거로 하면 종묘

정전의 건축형식이 어떤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었는지는 세가지 가능성으로 압축된다. 충선왕대의 <正室5칸+동서夾室(翼室) 각 2칸>의 건축구성에 대해, 첫 번째는 충선왕대의 구성이 익실까지 포함 9실이 되므로 이를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추정안①,②)이다. 두 번째는 협실(익실)이 정실과는 기능상·형식상 구분되는 명칭이란 점에서 볼 때, 충선왕대의 협실은 정실과 다른 형식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이 때문에 협실을 正室처럼 改築, 9실제로 구성했을 가능성(추정안③)이다. 세 번째는 이제현의 안대로 室數를 9실로 增設하여 正室은 9칸으로 하고 협실은 그대로 두었을 가능성(추정안④)이다.

먼저 정실 4칸을 증설하여 9칸으로 하는 세 번째 가능성(④)은 현실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묘 正室 확장이 거론된 공민왕 6년부터 공민왕 12년의 환안 당시까지 高麗史에는 종묘 重建이나 改建기록이 없다. 정전에 太室 4칸을 첨설하는 것은 까다롭고 큰 공역이었으므로 기록에 남지 않을 수 없다. 또한 9년 11월에 환도를 위해 白岳의 新宮으로 移御하지만 종묘가 백악에 새롭게 건립된 것도 아니다. 이는 12년 정월 흥건적이 평정된 후 還都에 대해 논의하는 중에

松都是 종묘가 소재한 곳이요 국가의 근본이니..³⁵⁾

라고 하는데서도 확인된다. 결국 이러한 언명은 흥건적의 침입으로 종묘가 파괴되지 않았고, 還安 당시의 종묘 정전 형식이 충선왕대의 정전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이제현의 건의에서 나타나듯 공민왕 6년까지도 동서 2칸의 협실(익실)에 신주가 봉안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후 還都와 新闕 영건문제로 종묘를 증건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동서 협실의 신위 봉안은 흥건적의 침입 이전까지도 그대로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還安 당시는 흥건적의 침입을 막 물

35) 같은 책, 卷40, 世家 第40, 恭愍王12年 正月 丁未. “松都 宗廟所在 國家根本..”

리친 때였으므로 충선왕대의 동서 협실 4칸을 正室로 改築(③)할 여유도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정과 추정을 종합해 본다면, 공민왕 12년 환안 당시의 정전 형식은 충선왕대의 <정실5칸+동서협실 각2칸>을 그대로 사용(①, 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서차방식은 태조가 협실에 봉안되는 變禮를 피하여 충선왕대와 같은 방식(추정안①)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나 명확한 근거는 없다.

송도의 종묘에 신주를 還安한 이후 노국공주가 죽은 14년부터 공민왕대의 기록은 공주의 魂殿, 影殿, 寢園의 대규모 영건기사로 점철된다. 다만 신돈이 처단된 20년 12월에 太室을 '修葺'하였다는 교서³⁶⁾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말그대로 공주의 죽음 이후 오랫동안 돌보지 않았던 종묘의 낡은 기와, 오래된 祭器따위를 새롭게 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高麗史의 종묘 관련기사는 禡王 원년의 충정왕 부묘, 우왕 2년의 공민왕 부묘 기록만이 의미있는 내용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따라서 조선 태조가 새로운 종묘 터를 찾기 위해 吉地를 물색하고 松都에 고려의 종묘 터만한 길지가 없자 고려의 종묘를 허물고 새 왕조의 종묘를 창건하는 것으로 결정했을 당시³⁷⁾, 그 당시의 고려 종묘 정전 건축형식은 충선왕 2년에 改築된 <正室5칸+동서夾室(익실)4칸>형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고려 종묘의 <동서夾室 각2칸>이 한양의 종묘 正殿 창건형식에서 <좌우翼室 각2칸>으로 인습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창건 당시 종묘 正殿의 건축형식에서 正室(太室)의 건축제도가 唐代 開元연간의 廟制를 근거로 했다면 左右翼室 제도는 고려 충선왕대의 世室 및 權安개념 東西夾室制를 기반으로 하였다. 太室제도가 唐으로 대표되는 종묘건축

의 보편적 규정을 수용한 제도라 할 때, 좌우翼室 제도는 世室의 건축적 구현을 독자적으로 현실화시킨 고려의 종묘 제도를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世室 형식의 구현이 지닌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고 계승되었던 것은 아니다. 충선왕의 동서협실 4칸은 세실개념 뿐만 아니라 임의적 봉안(權安)이란 기능마저 내포하고 있었고, 창건 이후 동·서상의 添設과 좌우 각 1칸 夾室의 삽입으로 인해 世室로서의 독자적 위계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창건 당시의 所作으로 추정되는 좌우 夾室 각 1칸의 起源과 그 성격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좌우 각 1칸 공간의 존재여부와 그 명칭은 창건 당시 기사에는 나오지 않으나 翼室과 太室 사이에 끼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태실 양측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夾室>로 명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夾室>은 어떤 필요성에서 창건되었던 것일까? 이는 禮制상의 祧主 봉안용 夾室과 같은 것일까? 더욱이 이 '협실'의 계획전거는 고려 종묘 정전에서 인습된 것인가 아니면 역대 종묘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설정된 것인가?

이 의문들에 대한 해명은 起源의 유형 중 '새로 설정된 형식'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선 고려 종묘 정전의 협실 존재 여부가 분석되어야 하며, 협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떤 근거에서 협실을 설정하였는지를 좀 더 넓은 문맥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협실 문제는 단순히 그 설정배경과 전거에 대한 분석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창건 이후 그 쓰임새가 어떻게 결정되어 나갔는지 하는 미묘한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창건 당시의 용도가 계획과는 다르게 변질되었다면, 그 변질의 건축적 원인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좌우 각 2칸 翼室의 경우가 문제는 좀 더 날카롭게 부각된다. 따라서 협실 및 익실이 어떤 건축형식으로 구성되었는지 하는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36) 같은 책, 恭愍王 20年 12月 己亥. "...具禮幣俸告上下 修葺太室.."

37) 太祖實錄 卷2, 元年壬申 10月 戊申. "城內無吉地 莫若前朝宗廟舊基. 毀其舊宮 掘其舊土 改作新廟 何不可之有"

4. 기원3 : 夾室 설정과 後退문제

4.1 '夾室' 설정배경과 그 전거

古制의 宗廟는 여러 신위가 모두 1廟에 봉안되는 同堂異室制가 아니라 正廟와 寢廟으로 구성되는 1廟에 신주 1位만이 봉안되어 여러 廟宇 건축군이 일괄을 이루는 都宮制였다. 여기서 始祖는 정중앙의 廟宇에 봉안되고 좌우에는 공덕이 높은 신위가 봉안된 世室과 親族 범위의 신위들이 소목의 차례대로 배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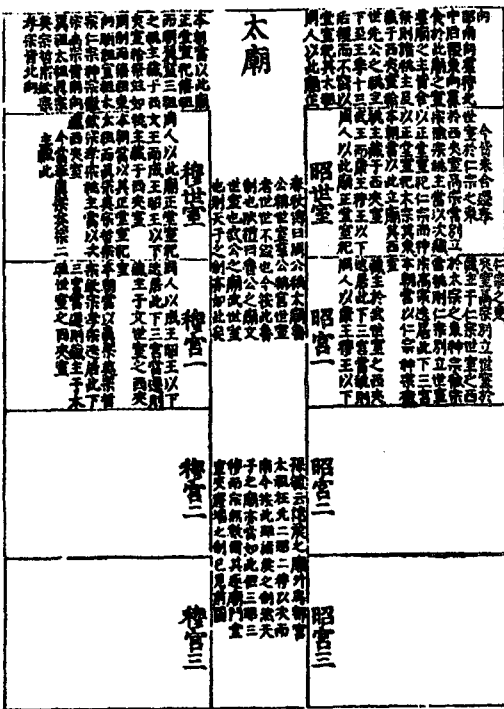


그림8. 朱子, 祧廟議狀, 朱子大全 卷15
 (太廟라 쓰여있는 윗부분 중앙 우측에 先公들의 祧主 봉안방식이 설명되어 있고, 昭·穆世室의 좌우측에 先王들의 祧主 봉안방식이 설명되고 있다. 내용은 본문과 같다)

朱子의 설(祧廟議狀)을 기준으로 할 때, 이같은 廟制로 인해 古制에서 祧主 봉안은 두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始祖 廟宇의 '서쪽 협실'에 시조를 제외한 王者(태조) 이전까지 先代 조상(先公)들의 조주를 봉안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좌우 世室의 '서쪽 협실' 각각에 소목 위치에 따라 王者 이후 각 왕(先王)들의 조

주를 봉안하는 것이다³⁸⁾. 義理상의 차이를 제쳐두고 본다면 여기서 공통점은 모두 '서쪽 협실'에 祧主를 안치한다는 점이다³⁹⁾.

古制인 도궁제가 동당이실제로 대체되자 종묘도 시조의 廟宇가 아닌 創業者, 즉 太祖의 묘우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태조 이하 祧主는 태조 묘우의 서쪽 협실에 봉안되었으며, 시조 이하 祧主는 별도로 건립된 祧廟나 別廟에 봉안되었다. 조선의 永寧殿 역시 이같은 사정에서 건립된 祧廟였다.

고려의 경우 종묘 정전에 祧主 봉안용 夾室이 구성되어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충선왕대의 종묘 정전 改作 기록에서 '太廟五室東西置夾室'이라 한 夾室은 世室이나 權安 개념이었음을 앞서 살펴 보았다.

고려사에서 祧主 봉안이 처음으로 문제가 된 것은 靖宗 2년(1036) 12월, 德宗의 祔廟時였다. 당시 창건 이후 최초로 9개의 太室에 모두 신주가 모셔져 있었고, 이 때문에 새로운 신주를 祔廟하려면 기존 신주를 제천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당시의 논의는 두가지로 갈렸는데, 하나는 黃周亮의 주장으로, 덕종의 升祔로 2소 2목의 수를 벗어나게 될 '惠宗, 定宗, 光宗, 戴宗'의 4위를 모두 제천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항렬

38) 朱子大全 卷15 祧廟議狀의 圖式. "周人.. 先公之祧主 藏于西夾室... (昭位)..祧主 藏于西夾室... (穆位)..祧主 藏于西夾室". ()는 필자.

39) 祧主 안치 방식에 대한 설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清代 萬斯同의 경우에는 '서쪽 협실만이 아니라 협실의 '동서쪽'에 모두 봉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先公의 祧主는 昭位일 경우엔 시조의 동쪽 夾에, 穆位일 경우엔 시조의 서쪽 夾에 안장한다. 先王의 祧主는 昭位일 경우 武世室의 양쪽 夾에, 穆位일 경우 文世室의 양쪽 夾에 안장한다"고 하였다. 萬斯同, 廟制圖考, 文淵閣四庫全書662, p.170. 또한 祧主를 서쪽 협실에 안치한다는 주자의 설에 대해 선조의 權近은 入學圖說에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祧主 2世는 동쪽 夾室에 안장해야 될 듯 한데도 朱子或問에서는 서쪽 夾室에 안장한다고 하였다. 이는 대개 동쪽이 尊位라서 (동쪽 협실에 두면) 태조의 전면에 위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해서 태조의 후면에 둔다고 한 것이리라. 비록 서쪽 협실에 있다고 해도 당연히 昭穆의 서차로 진설해야 된다". 權近, 入學圖說, 卷1, "二世之祧 疑當藏於東夾室 而或問以爲藏於西夾室. 蓋東尊而在太祖之前 故避而藏於太祖之後歟. 雖在西夾 亦當以昭穆陳之."

로 볼 때 태조가 덕종의 증조에게 불과하므로 親盡되지 않은 3位(惠, 定, 光)는 옮길 수 없고 다만 추존된 왕인 戴宗만 陵園으로 遞遷하자는 劉徽弼의 의견이다⁴⁰).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황주량이 4位的 毀廟를 강조하면서 祧主가 될 혜종, 정종, 광종을 '太祖 廟의 서쪽 벽(藏于太祖廟西壁)'으로 체천하여 안치하자고 한 언명이다. 일반적으로 조주 봉안을 '藏於西夾室', '遷于太廟夾室', '藏于夾室西壁'이라 표명하는 것과는 대비된다.

또한 高麗史 禮志에는

本朝(고려)의 廟制는 9실인데, 새로 부묘되는 신주는 봉안하고, 舊遷되는 신주는 本陵에 안치한다⁴¹)

고 하여 체천된 신주를 협실에 봉안하는 것이 아니라 陵園에 안치함을 말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고려의 경우 祧主는 본릉에 안치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이 때문에 종묘에는 조주용 협실제도가 창건 당시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황주량이 '(태묘의 협실) 서쪽 벽'이라 하지 않고, '태조 묘, 즉 태조의 神室 서쪽 벽'이라 한 것은 결국 협실이 없었음을 반증해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이런 사정 때문에 충선왕대의 2칸 익실 증설을 단순히 '夾室'로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고려 종묘 정전에 조주 봉안용 夾室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창건 당시 조선의 종묘 정전 협실제도가 고려조에서 인습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는 창건 당시 처음으로 '새롭게 설정된 형식'일 수밖에 없다.

同堂異室制가 정착된 이후 중국에서 祧主 봉안용 협실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때는 晉代이다. 일명 '儲'라는 명칭으로 태묘의 양측에 1칸씩 '東儲', '西儲'를 구성하였고, 조주는 서쪽 저(西儲)에 안장하였다⁴²). 또 唐代에는 협실을 東

西에 1칸씩 두었는데, 그 남북(측면)이 3칸으로 구성되어 초기에는 각 1칸마다 조주를 안장하였다가 그 수가 증가되면서 협실 북쪽 벽에 西上으로 일렬 봉안하였다⁴³). 宋代에는 太平興國 2년에 초창제도인 12칸의 정전에서 唐代의 협실제도를 따라 동서에 1칸씩 협실을 두고 나머지 10칸을 1廟당 2칸으로 하여 5廟를 구성하였고⁴⁴), 南渡 후인 紹興 16년에는 종묘를 새로 건립하면서 역시 北宋의 서울에 있던 종묘를 그대로 본떠 東·西夾室을 설치하였다. 송대의 협실제도는 太室과 그 형식을 달리하였는데, 당시의 논의를 보면 太室은 고제인 廟寢制의 室 제도 '戶東而牖西'를 충실히 따른 반면, 夾室은 이와 달리 지계문(戶)만 설치하는 것으로 차이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⁴⁵).

대표적인 唐·宋代의 협실제도만 보더라도 태묘의 東西 양측에 협실을 1칸씩 둔다는 공통점을 빼면 그 건축형식이 서로 달랐음이 확인된다. 협실의 구체적인 제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元代的 협실제도 논의에서 잘 드러난다. 동서협실이 처음으로 구비된 至治 3년의 논의를 보면, 우선 經傳으로부터 상고가능한 古制의 협실제도를 정리한 후 晉·唐·宋代의 협실제도를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唐과 古制의 협실제도를 時制와 절충, 東西 양측에 협실 각 1칸을 계획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⁴⁶).

43) 唐會要, 卷15 廟議上, 앞의 책, p.330. "...遷廟之主 藏于夾室西壁. 今夾室 南北三間 第一間世祖室 第二間.. 第三間.. 夾室西壁三間外 無置室處. 淮江都集禮 古者遷廟之主 藏于太室北壁之中 今請于夾室北壁 以西爲上 置睿宗皇帝神主石室".

44) 馬端臨, 앞의 글, 각주 12) 참조.

45) 같은 책, 卷94 宗廟考4, p.266. "十六年 太常寺言 契勘在京廟制 每室 東設戶 西設牖 西墻作祔室 藏祖宗后神主 又有東西夾室 其夾室止設戶. 見今行在太廟 係隨宜修蓋 未曾安設祔室. 今既創 行修蓋即合體 倣在京廟制同殿異室. 修蓋及將 殿東西作兩夾室 其兩夾室止設戶 十一室即依廟制設戶 其殿南北深七丈 每室於西壁 從北以南一丈二尺作厚墻 隨宜安設祔室 其西夾室亦合設祔室 藏順祖室神主. 詔從之. 乃廣太廟".

46) 元史, 志卷74 志第25 祭祀3 宗廟上, 앞의 책. "爾雅를 살펴보건대, 室에 東西廂이 있는 것을 廟라 한다 하였고 그 注에 夾室은 前堂이라 하였다. 同禮(一作周書)에 西夾에

40) 高麗史, 卷61 志 第15 禮3.

41) 같은 책, "本朝廟制九室 而有新祔之主則奉 遷主安於本陵"

42) 萬斯同, 앞의 책, p.203. "晉制 廟之兩旁各有室一間 名曰東儲西儲 以擬古之夾室 遷主悉藏於西儲"

이러한 元代의 논의는 협실제도가 古制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또 동시에 唐·宋代의 夾室제도도 太室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협실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통용되던 건축형식으로 절충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용도가 다르면 그 건축형식도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독특한 正名論의 건축관이 발견된다. 다만 강조할 것은 東西에 夾室 각 1칸을 부설한다는 공통원칙 외에 그 독자적인 형식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唐·宋·元代로 내려올수록 명확해졌다는 점이며, 협실이 점차 종묘의 필수적인 건축형식으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이다.

창건 당시 정전의 동서 협실 각 1칸의 附設은 이러한 역대 廟制에 대한 이해와 협실제도 자체의 이해 심화란 시대적 추세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 남향한다 하였고 그 注에 西廂의 夾室이라 하였다. 이것이 東西夾室에 대한 正文이다. 賈公彥은 실에 東西廂이 있는 것이 廟이고, 그 夾은 모두 序에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다면 夾이란 지금의 耳房 따위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 제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는다. 東晉의 太廟 正室은 16칸, 東西에 '儲'가 각 1칸으로 공히 18칸이었다. 여기서 이른바 '儲'가 협실이 아니겠는가? 唐의 貞觀故事에 遷廟한 신주는 협실의 서쪽 벽에 보관하는데 남북이 3칸이라 하였다. 또 宋의 哲宗 역시 동쪽 협실에 봉안된 적이 있으니, 후에 비록 1실을 증진했다 해도, 그 협실은 곧 예전의 제도였다. 이것이 唐·宋의 협실이니 기타 실 제도와 크게 다름이 없다. 五帝와 三王은 서로 禮樂을 답습치 않았다. 지금 廟制는 모두 古制에 합치되지 않으니, 시의에 변동해야 된다. 현(신축 중인) 廟宇 15칸, 남북 6칸에서 東西 양측 2칸을 취하고 唐의 남북 3칸 제도에 준해 마룻대를 포개어 3칸으로 만들며, 벽은 홍색으로 칠하여 東西의 序에 준하고, 남향으로 門을 만들어 현 室戶 제도와 같이 하며, 앞을 비워 廂에 준하면 이른바 夾室의 前堂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고제에 다 합치되지 못하나 현 사정에는 합당할 것이다." "按爾雅曰 室有東西廂曰廟 注 夾室前堂。同禮曰 西夾南向 注曰 西廂夾室。此東西夾室之正文也。賈公彥曰 室有東西廂曰廟 其夾皆在序。是則夾者 猶今耳房之類也。然其制度 則未之聞。東晉太廟正室 一十六間 東西儲各一間 共十有八。所謂儲者 非夾室與? 唐貞觀故事 遷廟之主 藏於夾室西壁 南北三間 又宋哲宗亦嘗於東夾室奉安 後雖增建一室 其夾室仍舊。是唐宋夾室 與諸室制度無大異也。五帝不相沿樂 三王不相襲禮。今廟制皆不合古 權宜一時。宜取今廟一十五間 南北六間 東西兩頭二間 準唐南北三間之制 壘至棟三間 壁以紅泥 以準東西序 南向爲門 如今室戶之制 虛前以準廂 所謂夾室前堂也。雖未盡合於古 於今事爲宜"。

더욱이 창건 당시 정전 형식에 반영된 太室 좌우 1칸의 공간은 祧主봉안의 용도로 설정된 협실로 보는 것이 그 구성상 논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좌우 익실 각 2칸이 고려조에서 계승된 世室 혹은 權安 개념의 공간이고, 태실 7칸 중 중앙 5칸=5실을 제외한 좌우 각 1칸은 開元연간 廟制에서 규정된 廡, 즉 곁방(旁室) 혹은 耳房 개념의 공간이라 할 때 나머지 익실과 태실 사이에 끼어있는 좌우 1칸의 공간 용도는 祧主 봉안의 夾室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의 시대적 인식수준과 그 용도를 종합해 볼 때, 창건 당시 협실은 '禮文'을 통해 그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고려 종묘와는 다르게 '새롭게 설정된 형식'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창건 당시 좌우夾室의 설치 의도가 제대로 계승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미 성종대에 이르면 國朝五禮儀序例 宗廟 도설에서도 보이듯 夾室과 翼室의 용어마저 혼란되고 있기 때문이다⁴⁷⁾. 이러한 혼란은 일차적으로 祧主 봉안의 祧廟인 永寧殿이 별도로 건립되어 협실의 의미가 무의미해진 사정에서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좀 더 근본적으로 夾室 뿐만 아니라 翼室까지 포괄하여 이러한 혼란과 용도 변질의 문제를 살펴보면, 창건 당시 夾室과 翼室의 건축형식 속에 이미 그 같은 가능성이 예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주 봉안의 石室이 太室, 翼室, 夾室에서 각각 어떤 건축형식으로 구축되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에 대한 해명은 종묘를 再建하기 위한 선조40년의 논의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47) 國朝五禮儀序例에서는 창건기사의 '左右翼室各二間'을 '東西各有夾室二間'으로 표현하고 있다. 翼室과 夾室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祧主 봉안의 夾室 개념은 17세기 주자예학의 전성기에 이르러서야 다시 제대로 이해되었다. 이는 현종연간의 영녕전 증진문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협실이 祧主를 봉안할 뿐만 아니라 태조 혹은 시조 묘의 협실이어서 자손들의 조주를 봉안할 수 있다는 예리한 인식으로 협실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자세한 것은 顯宗4年 4月 壬寅 기사 참조.

4.2 後退內 石室 설치와 신주봉안 서차

현 종묘건축의 근간은 광해군대의 재건에 있고, 그 재건이 명종대의 골격 위에서 거의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명종대의 중수 내용과 범위가 창건 당시 종묘 건축형식의 구체적 실상을 파악하는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명종대의 종묘工役 내용이 모호하고 관련기록도 거의 전무하다는데 있다.

다만 宣祖 40년의 종묘 재건 논의시 宗廟營建提調인 韓浚謙의 언명에서 소실 前의 종묘 정전 건축형식에 대한 기록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예전 종묘의 廟 내부가 매우 좁았다는 선조의 지적에 대해 한준겸은

지난 번 도제조와 함께 옛 터를 살펴보았는데, 후퇴(後退)의 보(楸)길이는 10척, 중당(中堂)의 보길이는 20척, 전퇴(前退)의 보길이 역시 10척입니다. 후퇴에 감실을 만들어 신주를 보관하는데, 평상시에는 동향으로 하다가 제사지낼 적에는 신주를 내와서 남향으로 하고, 신위 앞에는 욱석(褥席)을 설치하고 중당에는 상탁(床卓)과 향상(香床)을 설치하며, 문 안에는 의장(儀仗)을 설치하기 때문에 상계서 분향하시고 조금 물러나 꿇어 앉으시면 짐사하는 신하들이 출입할 곳이 없게 됩니다. 지금의 종묘제도를 가지고 고친다면 중당의 보길이에 수척을 더하여 늘려야 할 것입니다(48)

고 하여 ‘옛 터’의 정전이 ‘전·후퇴’ 평면구성을 말하고 그 구체적인 척도까지 언급하고 있다. 물론 이 때의 ‘옛 터’란 명종대에 증건된 11실 규모의 종묘 터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상의 명종대 종묘 정전 건축형식은 창건 당시의 건축형식을 어느정도 반영하고

있었을까?

명종대에 이루어진 종묘 정전의 증건이 기존 형식과 尺數는 그대로 두고 단순히 4칸을 첨설하여 室數를 늘리는 정도였는지, 아니면 태실의 건축형식 자체를 변경하는 큰 범위의 것이었는지 상기한 기록만으론 확실치 않다.

창건 당시의 평면형식을 간접적으로 밝혀주는 기록이 세종조에 제정된 五禮儀 ‘親裕宗廟儀’에서 발견된다.

한나는 祭器 진설시에 穆祖, 度祖, 太祖의 祭器는 “전면기둥 사이(前楹間)”에 놓여서 북향하고 翼祖, 桓祖의 祭器는 “지계문 밖(戶外)”에 놓여서 남향한다(49)는 기록이다. 이는 곧 神室 지계문 밖에 벽이 없이 개방된 전면 기둥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평면형식이 최소한 전퇴구성임을 알려준다.

또 하나는 “신주를 받들기 위해 휘장 안쪽으로 나아가 안석 뒤에서 꿇을 열어 (신주를) 신좌에 설치한다(奉神主詣神櫪內 於几後啓匱設于座)50)”는 기록이다. 여기서 ‘휘장 안쪽으로 나아가간다’는 것은 하나의 공간 내에 휘장으로 격리된 부분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측면이나 전면 공간에 휘장을 쳐서 신주를 봉안하는 곤란하므로, 이는 곧 휘장이 쳐진 곳이 일정 면적으로 구획된 후면임을 알려준다. 후퇴가 설정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공간은 결국 신주를 봉안하는 감실이므로 창건 당시 石室의 설치방식과 관련지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開元연간의 석실규정은 神室 ‘서쪽 벽 남단부’, 즉 ‘아랫목(奧)’ 위치에 ‘돌’로 만들어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선초 기록인 國朝五禮儀序例에도 “每室右壁 作坩室”이라 하여 역시 서쪽 벽에 감실을 제작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 위치가 南端인지 北端인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서쪽 벽에 감실을 만든다는 점에선 開元연간의 石室 규정과 동일하

48) “頃日與都提調奉審舊基 則後退楸長十尺 中堂楸長二十尺 前退楸長亦十尺. 以後退作龕室藏主 常時東向 當祭時出主南向. 前設褥席 中堂設床卓香床 門內設儀仗. 故自上焚香少退跪 則執事之臣 無出入之處. 以今廟制改之 則欲以中堂楸長加退數尺矣”. 承政院日記, 萬曆35年 丁未, 宗廟儀軌(上),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7, p.141. 또한 현 종묘 정전의 尺數를 보면 전후퇴 보길이는 동일하나 중당 보길이는 24영조 척으로 한준겸이 보고한 ‘옛 터’의 20척보다 4척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재관리국, 종묘정전 실측조사보고서, p.126.

49) 世宗 卷129 五禮·吉禮儀式, 親裕宗廟儀, 陳設조, “穆祖 度祖 太祖位 尊彝 在前楹間 北向. 翼祖 桓祖位 尊彝 在戶外 南向”.

50) 같은 책, 晨禱조, 五禮儀I, 세종장헌대왕실록20, 세종대 왕기념사업회, 원문p.53.

다. 따라서 “每室右壁” 혹은 서쪽 벽에 만든다는 것은 말 그대로 神室 양측에 격벽이 있던가 아니면 神室의 어느 일부분에만 벽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신실 양측에 격벽이 있다면 이는 각각의 태실이 하나 하나 격리된 폐쇄적 공간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럴 경우 神靈을 위한 공간의 幽閉性은 확실하게 보장될 수는 있으나 신실의 좌우쪽이 격벽으로 한정되는 이유로 행례시 많은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태실 전체가 하나의 室 단위가 되면 아랫목은 어쩔 수 없이 벽 남단에 위치하게 되어 신주는 지계문 근처에 설치된다. 이 경우 신주가 室에 봉안되고 행례는 堂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법임을 감안할 때, 만약 지계문 앞의 前堂이 큰 공간이라면 실에 봉안된 신주를 내어 前堂에서 祭禮를 올릴 수 있지만, 前退 정도의 작은 공간에 불과하다면 이는 행례상의 곤란함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전퇴구성에서 이를 해결하려면 폐쇄된 실 북쪽 후면 부분에 휘장을 쳐서 이 공간만을 神室으로 한정하고 휘장 바깥의 남쪽 부분은 床卓을 차리는 행례공간, 즉 堂으로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된다. 그런데 하나의 태실 공간에서 북쪽 후면에 室이 형성되고 그 남쪽에 堂이 구성된다면 그 室과 堂의 건축형식이 각각 구분될 필요성이 생겨난다. 이 경우 태실 전체에 격벽이 설치될 필요는 없어지고, 신실 중 석실 부분에만 벽이 구성될 가능성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신실의 일부분만을 격벽으로 처리하여 감실을 만든다고 할 때, ‘後退’를 두어 양측에 벽을 치고 서쪽 벽에다 石室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구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추정을 근거로 다시 五禮儀의 구절로 돌아가면 ‘휘장 안쪽’云云은 결국 石室이 설치된 서쪽 벽이 ‘後退’의 ‘右壁’이었고, 따라서 정전의 형식이 전퇴형식뿐만 아니라 후퇴형식이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준다.

결국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창건 당

시의 평면형식은 현 정전 평면형식과 동일하게 전·후퇴구성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명종대 정전 ‘옛 터’의 尺數를 “後退-中堂-前退”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는 한준겸의 언급이 다시 주목된다. 이는 바로 창건 당시의 평면형식을 시사하는 것이자 명종대 增建이 건축형식 자체를 변경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음을 함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종대의 중요 정전 형식이 광해군대 中堂의 尺數조정과 신위좌향 변경을 제외하고 거의 그대로 현 중요 정전으로 계승되었다고 본다면, 이는 곧 현 중요 정전의 ‘좌우 翼室 각 2칸, 夾室 각 1칸, 전·후퇴 太室’이란 기본골격 자체가 창건 당시 정전 평면으로부터 그대로 계승된 형식인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다만 그 차이는 신위봉안이 각 태실 후퇴부분의 서쪽 벽에 東向으로 안치되어 있었고, 中堂의 보길이가 지금보다 작았으며, 正殿 7칸 중 태실 5칸을 제외한 좌우 각 1칸의 빈 공간, 즉 廡는 좌우 태실과 격벽으로 막혀져 있었을 가능성 등으로 정리된다(그림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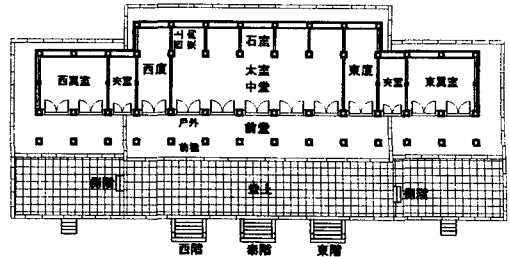


그림9. 창건 당시 중요 정전 평면형식 추정안

다른 한편 창건 당시 감실이 특정한 형식, 즉 ‘후퇴’ 구성으로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현 정전의 좌우 익실과 협실에 후퇴가 附設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祧主를 봉안하는 현 永寧殿의 東·西夾室이 후퇴를 설정하여 감실을 설치한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그런데 현 정전의 익실과 협실에 후퇴, 즉 감실이 설정되지 않은 이유가 祧廟인 영녕전의 존재로 그 祧主 봉안의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창건 당시 좌우 익실과 협실에도 후퇴가 설정되었는지의 여부가 문제로 제

기된다.

창건 당시 좌우 익실과 협실은 '不遷位, 祧主, 權安'등 신주 봉안용도로 계획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신주 봉안의 공간이라면 후퇴를 설치하는 것이 일견 자연스런 형식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창건 당시 익실과 협실에도 후퇴가 부설되어 있었으나 영녕전의 창건으로 그 형식이 무의미해지고 어떤 시점, 특히 광해군대 再建처럼 정전 형식이 새롭게 계획, 영건된 시점에서 제거되었던 것일까? 아니면 태실 봉안 신주와는 다른 감실 형식이 요구되어 창건시부터 후퇴가 부설되지 않았던 것일까?

이 문제들에 대한 해명은 영녕전 夾室의 감실 형식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⁵¹⁾.

현종조에 영녕전의 增建 논의가 일어나면서 여러 방안이 제출되었는데, 여기서 영녕전 翼室(夾室) 형식에 관한 흥미로운 언급이 보이고 있다.

혹자는, “翼室에 後退가 없어서 감실이 북쪽 벽에 설치되기 때문에 전면이 협착해지는 일은 여기서 말미암습니다. 지금 만약 전퇴와 후퇴를 아울러 설치하되 정전에 비해 그 尺數를 조금 줄인다면 합당할 것입니다” 하였다⁵²⁾

즉 기존 영녕전의 좌우 익실에는 후퇴를 두지 않고 조주 봉안의 감실을 설치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는 곧 영녕전 창건시의 좌우

익실 형식이라 간주될 수 있으며, 그 같은 점에서 종묘 창건시 좌우 익실 및 협실의 후퇴 설정 여부를 밝혀주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그런데 이미 훼손되어 초천된 신주가 협실에서 후퇴 없이 실 북쪽 벽에 봉안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말 그대로 後退 없이도 감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감실 설치시 후퇴형식과의 결합 여부가 어떤 차이를 담고 있는지가 문제된다.

후퇴의 설정 없이 실 북쪽에 감실을 만들어 신주를 봉안한다는 것은 夾室 혹은 翼室이 지니는 건축형식상의 위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夾室이나 翼室은 몸체인 太室에 부속된 ‘결방’이거나 ‘날개방’이므로, 태실과 구별되는 건축형식상의 차이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위계의 구별은 평면상의 전·후퇴 설정이나 단면상의 지붕단차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협실이나 익실에 신주 봉안기능을 부여하면서도 후퇴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바로 위계 구별을 강제하는 건축형식상의 내재적 문제에서 연유된 것으로 추론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이같은 건축위계상의 구별 때문에 夾室 및 翼室이 온전한 신주봉안 공간으로 계승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不遷位는 祧主나 權安된 신주와는 위계상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신주이므로 太室 형식의 위계 이상은 보장되어야만 하며, 또한 祧主 봉안의 경우에도 후퇴 없는 형식의 적절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종대의 영녕전 改修에서 後退가 새롭게 祧主 봉안 공간에 부설되는 방식으로 형식 변경된 사실이야말로 이를 반증해 준다.

결론적으로 후퇴문제를 포함하여 창건 당시 종묘 정전의 평면형식을 종합해 보면, 太室의 경우 석실을 후퇴부분에 설치하였고, 좌우 翼室 및 夾室의 경우 후퇴 없이 감실을 설치하려 했던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상의 위계 차이로 말미암아 협실 및 익실에 대한 계획의도가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던 것으로 추론된다.

51) 영녕전은 세종조에 종묘 정전형식을 그대로 반영하여 영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성종대까지 영녕전의 增室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國朝五禮儀序例 영녕전 도설에서 보이는 ‘좌우 익실 각 2칸과 협실 각 1칸(이를 통칭하면 좌우익실 각 3칸)’의 그림은 영녕전 창건 형식이 종묘 정전과 동일한 형식이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근거이다. 또 영녕전은 광해군대에 종묘와 함께 재건되는데, 이 때 “영녕전은 고치지 않고 옛 제도를 그대로 따랐다”는 실록기사(현종4년 3월 신사일)나 “정전 4칸, 좌우 익실 3칸”으로 구성되었다는 연구결과(김동욱외, 앞의 논문, p.280)를 보면 세종 창건 당시의 규모나 형식에 큰 변경이 가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종조의 增建 이전 영녕전은 광해군대의 형식이자 창건 당시의 형식인 좌우 각 2칸의 익실과 각 1칸의 협실, 총 각 3칸의 祧主봉안室로 구성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2) 顯宗 癸卯 3月25日, 禮曹臚錄, 宗廟儀軌(上), 앞의 책, p.164. “或以爲翼室無後退 而龕室設於北壁 故前面之窄穢由於此. 今若並設前後退 而比正殿稍減其尺數 宜當”.

이제 마지막으로 창건 이후 최초 5廟의 신주 봉안 서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선조40년의 승정원일기에서 한준겸은 神位序次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국초 중묘 7칸을 세울 적에 좌우의 각 1칸에는 동서 협실을 두고 중간을 5실로 만들어 제 1실에 태조께서 위치하고 그 아래 4실에 2소, 2목을 만들었는데, 중묘(中廟, 중종)조에 불천위를 만들며 4칸을 증설하였으니, 지금은 11칸입니다⁵³⁾

라고 하여 5칸 태실 좌우의 각 1칸 공간 ‘廈’를 夾室로 언급하면서 중앙 5칸의 서쪽 1실부터 차례로 신주를 봉안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창건 이후 최초 5廟의 신주 봉안 서차에 대한 하나의 단서로 간주될 수 있다.

최초 5廟의 신주봉안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중앙 5칸 중 태조를 중앙에 봉안하고 穆祖, 度祖를 서쪽 昭位에 翼祖, 桓祖를 동쪽 穆位에 배열하는 左右소목제로 봉안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림10)⁵⁴⁾.



그림 10. 左右昭穆 추정안(이강근)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몇가지 심각한 오류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 태조가 추존된 선조들을 자손처럼 좌우에 거느리고 始祖의 자리에 위치한다는 것은 논의할 필요도 없이 禮學의 기본적인 서차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 번째 좌우소목의 서차 근거가 불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 근거로 세종조 오례의 ‘神位’조의 祫享시 신주진설과 入學圖說에 보이는 時祫之圖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祫祭에 대한 오해와 그로 인한 판단착오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祫祭는 “먼 선조를 祧廟로 체천하는 일”이 아니라 천자나 제후의喪이 끝나면 ‘태조의 廟’에서 아직 조천되지 않은 신주와 이미 조천된 신주 모두를 모아 合祀하는 四時의 間祀이다⁵⁵⁾. 이같은 성격 때문에 고제에서는 태조의 廟堂에 모든 신주를 소목서차로 진설하는데, 태조는 서쪽 중앙에 동향하고, 昭位의 신주들은 태조의 북쪽에서 남향하며, 穆位의 신주들은 태조의 남쪽에서 북향하여 배열된다. 入學圖說의 時祫之圖는 바로 태조廟에서 진설되는 이같은 신위 서차를 예시한 것일 뿐이지 좌우소목 배치를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세종조 五禮儀의 ‘親祫宗廟儀’는 祫祭 절차를 찬술한 것으로 神位를 중묘 前堂(戶外), 즉 전퇴부분에 진설하고 있다. 이를 보면 “布昭穆座於戶外 自西以東 ..穆王..度王..太祖..皆在北南向 ..翼王..桓王..皆在南北向⁵⁶⁾”이라 하여 서쪽 중앙의 신좌를 남겨둔 채 穆祖·度祖·太祖를 昭位에 놓고 북쪽에서 남향으로, 翼祖·桓祖를 穆位에 놓고 남쪽에서 북향으로 배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고제의 祫祭時 진설방식과 동일하나 고제와 달리 서쪽 중앙위가 비어 있는 까닭은 태조가 아직 제1위의 위치에 오르

53) “國初立廟七間 左右各一間有東西夾室 中爲五室 第一室太祖居之 其下四室爲二昭二穆. 中廟朝爲不遷之位 增設四間 今爲十一間矣”. 承政院日記 同日기사, 앞의 책, p.141.

54) 좌우소목 서차방식을 ‘소목법’이라 범칭하여 圖示하고 그 근거를 각주35)에서 제시하고 있다. “창건 중묘의... 이때 추존된 四祖의 신주를 어떻게 봉안하였는지는 世宗實錄 제128권 五禮 ‘神位’條의 다음 기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즉, “宗廟祫享設座於戶外自西以東穆祖度祖太祖并南向 翼祖桓祖并北向”. 또 이러한 신주봉안법의 근거가 權近의 入學圖說 時祫之圖(祫: 遠祖를 祧廟로 遞遷하는 일)에 실려 있다. 태조의 부묘에 대해서...(후략)”. 이강근, 앞의 논문, p.65. 또한 추정된 신위봉안 도식을 보면 왼쪽엔 昭位, 오른쪽엔 穆位를 따르는 古制의 ‘左昭右穆’서차를 따르지 않고 ‘右昭左穆’의 서차방식을 따라 도시하고 있음이 흥미롭다. ‘右昭左穆’의 서차법은 元代 英宗代에 나타나는데, 이는 元代에서조차 영종을 뒤이은 晉宗代에 곧바로 시정된 誤禮였다.

55) “祫則毀廟與未毀廟之主 皆合食於太祖 見於公羊傳”. 또 “四時之間祀 追享·朝享, 祠·禴·嘗·烝 四時之正祭也. 追享則祫祭 取追遠之義 故名追享. 朝享則祫祭 羣廟之主 皆合食於太祖 有朝之義 故名朝享. 以其間於四時正祭之中 故名四時之間祀”. 秦蕙田, 五禮通考 卷97 吉禮97 祫祫, 文淵閣四庫全書137, p.317. 또한 p.329.

56) 親祫宗廟儀, 陳設조, 앞의 책, 원문p.50.

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五禮儀의 裕祭시 신주 규정은 모든 신주를 한 곳, 즉 태실의 戶外와 前楹 사이-前堂에 모아 합사할 때의 신주 서차를 보여주는 것이지, 각 태실내에 봉안된 평상의 서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 태조가 서쪽 중앙에 위치하지 못하는 사정이야말로 추존된 先公들보다 태조가 앞 설 수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례이다.

더욱이 신주의 서차방식은 대단히 중요한 典禮이므로 그 근본적 변경은 기록에 남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좌우소목 서차방식이 元代에서 시작되어 明代로 계승되었다는 사실과 선초 창건시의 그 영향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해도 선초의 좌우소목이 계속 지속됐어야 옳지 오히려 西上東向의 소목서차로 변경되었다는 점도 납득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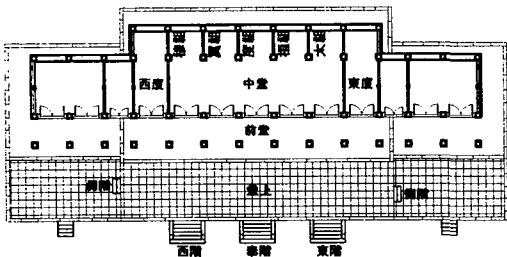


그림11. 최초 5廟의 西上東向 신주봉안 추정

따라서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창건시부터 적어도 태조가 부묘된 태종10년까지 태조를 중앙에 두는 좌우소목으로 서차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창건시 종묘 계획에 큰 영향을 준 唐·宋代나 고려조의 경우 신주서차가 모두 서상동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선초 신위봉안의 성격을 알려주는 중요한 근거라 판단된다.

그렇다면 결국 앞서 인용된 한준경의 언명이야말로 창건 당시 신주봉안이 西上東向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실증자료인 셈이다. 그러므로 창건 당시 이루어진 西上東向의 서차 방식은 선조 40년의 종묘재건 논의에서 날카롭게 비판되어 西上南向으로 변경되기까지 오랜동안 지속된 종묘 정전 신위봉안 방식이었

던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선초 종묘 정전의 건축형식에서 보이는 의문점을 단서로 하여 그 계획의 起源을 세가지 차원에서 밝혀보고자 하였다.

우선 선초 종묘 정전의 건축형식 중 <太室 형식>은 國家典禮의 모범인 唐代 開元연간의 廟制 규정에 따라 '새롭게 해석된' 형식이었고, <좌우 각 2칸의 翼室>은 고려의 종묘 정전에서 독자적으로 이룩된 權安 및 世室개념이 '인습'된 형식이었으며, 태실과 익실 사이에 낀 <좌우 각 1칸의 夾室>은 동시대의 전반적인 廟制 인식 수준에서 비롯된 '새롭게 설정된' 형식이었다.

이 세가지 기원을 전거로 하여 5廟 봉안의 神室 5칸과 좌우 廡 2칸으로 구성되는 7칸 太室, 그리고 정전 좌우의 翼室 각 2칸과 夾室 각 1칸의 창건 당시 종묘 정전의 건축형식이 설정되었다.

이는 선초의 종묘 정전이 단순히 고려의 종묘제도만을 답습한 형식이 아니라 역대 廟制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면밀하게 계획된 형식이었음을 말해준다. 결국 선초의 종묘 정전은 唐代의 廟制가 이룩한 보편성과 고려의 종묘가 이룩한 독자성을 동시에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창건 당시 정전의 건축형식이 원칙 그대로 계승된 것은 아니었다. 태실 좌우의 廡는 좌우 夾室이나 神室과의 모호한 관계로 인해 太室로 전환되었고, 좌우 翼室은 태종대 동서익랑의 침설, 태실과 익실 사이에 낀 협실과의 관계, 後退가 없는 형식등으로 인해 世室로서의 건축적 위계를 상실해 버렸으며, 좌우 夾室은 祧廟인 永寧殿의 別建으로 祧主봉안의 용도를 잃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正殿 일대와 그 외곽의 건축형식인 기단, 계단, 廟庭(월대), 동·서문, 남문(神門), 신

주, 재궁, 공신당, 칠사당 등은 禮書와 역대 唐·宋·元代의 典禮를 검토하여 禮制에 부합 되도록 그 형식을 구성하되, 다만 상고할 수 없었던 제도는 고려의 종묘에서 인습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高麗史 禮志의 '禘祫親享儀'에서 분석된 종묘 일곽의 건축형식이 거의 그대로 창건 당시 종묘 건축에 반영되었다는 점, 그리고 고려 종묘에서 인습되었던 공신당의 위치가 태종대에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禮書등을 통해 고찰된 형식과 고려에서 인습된 제도의 범위를 시사해준다.

세종조 오례의, 선조 40년의 재건 논의, 현종 조 영녕전 증건 논의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전 太室은 전·후퇴의 평면형식, 좌우 夾室과 翼室은 후퇴 없이 감실을 설치한 형식임이 밝혀져 현 종묘 정전의 건축형식이 창건 당시의 所作임이 고찰되었다. 石室문제와 관련지어 살펴 본 최초 5廟의 신위봉안은 기존 연구에서 주장된 것처럼 左右昭穆制가 아닌 西上東向의 서차로 봉안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 창건 당시 종묘 정전 건축형식의 기원과 그 평면형식에 대한 연구는 실증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부분 추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건축형식에 대한 이해는 창건 이후 종묘 건축의 변천 뿐만 아니라 前代인 고려 종묘건축의 성격과 역사적 위상에 대해서도 여러 단서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향후 고려시대 종묘 건축, 더 나아가 통일신라의 종묘건축까지도 아우르는 보다 확산되고 심화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高麗史.
2. 太祖實錄, 太宗實錄, 世宗實錄.
3. 舊唐書, 新唐書, 宋史, 元史, 경인문화사.
4. 國朝五禮儀, 민창문화사 영인본, 1994.
5. 宗廟儀軌(上),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7.
6. 大唐開元禮, 文淵閣四庫全書646, 臺灣商務印書館.
7. 唐會要(上), 世界書局, 民國78年 5版.
8. 明集禮(一), 文淵閣四庫全書649, 臺灣商務印書館.
9. 李賢求譯, 國譯 洪武禮制, 回想社, 1986.
10. 杜佑, 通典(1-5), 中華書局, 1996年3次印刷.
11. 馬端臨, 文獻通考, 文淵閣四庫全書610-612, 臺灣商務印書館.
12. 萬斯同, 廟制圖考, 文淵閣四庫全書662, 臺灣商務印書館.
13. 조병수·김동욱, 종묘건축의 복원적 연구, 논문집 제20집, 경기대학교, 1987.
14. 김동욱, 조선시대 종묘 정전 및 영녕전의 건물규모의 변천, 문화재 제21호, 문화재관리국, 1988.
15. 정기철, 17세기 士林의 廟寢制 인식과 書院 영건, 서울대학교TD, 1999.

The Origin of the architectural form embodied in ChongMyo's Main Building in the Early Choson Dynasty

Jung, Ghi-Chul

(Department of Architecture, Sunmoon University)

ABSTRACT

In order to reveal the source of the architectural norm embodied in the first built-form of ChongMyo's Main Building, three analytic types were introduced into research. According to the level of accepting the architectural form of ChongMyo in the Koryo Dynasty, these types were defined by 'newly interpreted form', 'newly introduced form', and 'coventionally accepted form'. Among the first built-form in ChongMyo's Main Building, the form of 'TaeSil' was newly interpreted on the basis of the Tang's realating norm, and the form of 'HyupSil' was newly introduced according to the contemporary trend that had increasingly regarded it as an indispensable form. But the form of 'IkSil' had the different source, that is, the architectural form of ChongMyo in the Koryo Dynasty. After reconstructed by the King ChungSun, that form had been sustained without any change until the end of Koryo Dynasty. In result, that form had been accepted conventionally at the first time of building ChongMyo in the ChoSon dynasty.